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9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0)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8.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6)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3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3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3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3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3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35.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0)
37.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3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3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
40.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5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5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52.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5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5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9.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6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6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1)
6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5)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1)
6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9)
6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5)
6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8)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3.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7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7.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8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8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8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6.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추가)

상정된 안건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 7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 7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 7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 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 7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 7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 7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 7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 7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 7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7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7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7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7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7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7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57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0) … 65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5
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5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5
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5
2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5
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5
2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65
28.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6) … 67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 67

3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	67
31. 석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67
3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67
3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67
3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67
35.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67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0)	67
37.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67
3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68
39.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	68
40.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8
4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8
4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8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8
4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8
4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8
4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8
4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8
4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8
4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68
5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71
5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71
52.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71
5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71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71

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	71
5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71
5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1
5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1
59.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71
6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76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	76
6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1)	76
6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5)	76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1)	76
6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9)	76
6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5)	76
6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8)	76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6
6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6
7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6
7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6
7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6
73.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6
7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0)	83
7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3
7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3
77.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3
7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3
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3
8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3
8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87

8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87
8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	87
8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7
8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7
86.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7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94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94
8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95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95
1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96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심사한 후 8개 국회상임위원회 소관 75건의 타 상임위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소위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56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심사보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간사님께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승원 소위원장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그동안 총 8차례에 걸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용민·박은정 의원, 김한규 의원, 김승원 의원, 김남희 의원, 서영교 의원, 손술 의원, 차규근 의원, 홍기원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올해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설립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에 따라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각각 책임지도록 명문화하고 수사 관련 조항 전반에서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만 영장집행 지휘권과 압수물 환부 등 재판집행 및 증거물 관련 처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권한 일부를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송치된 사건 등 보완수사요구 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면서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하고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관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구를 하면서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 수사과정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사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수사기록 열람·복사 청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사건에 대한 통지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고죄 등 일정 범죄의 고발인에게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검사에 대한 피해자의 면담신청권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발사건 재정신청 대상을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확대하면서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에 수사와 기소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될수록 견제와 균형은 약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법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숙의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단체, 검찰과 경찰, 변호사, 학계, 관계부처, 여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제도를 만들고가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1소위원회 김승원 간사님을 비롯한 제1소위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다음은 안전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민전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왜 안 받으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토론할 시간을 드릴 텐데 토론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녹여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고 이렇게 합니까?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강력히 요구하시니 국민의힘에서 박형수 간사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간사님, 두 분에게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의사진행 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 한 분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간사가 하고, 두 분 정도는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어요. 좀 지키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언제부터 법사위에 계셨는데 관례를 얘기하세요?

○**박형수 위원** 제가 위원장님보다 훨씬 오래 있었어요.

○**곽규택 위원** 다른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서영교** 우선 제가 19대부터 있었어요.

○**박형수 위원** 21대……

(웃음소리)

○**위원장 서영교** 2012년부터, 제가 19대부터 있었어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관례를 더 잘 아시겠네.

○주진우 위원 그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19대 때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자, 오늘 토론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겠으니 우선 박형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고요. 그리고 또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하겠다 그러면 한 분씩 더 줍시다.

○위원장 서영교 꼭 하고 싶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원 위원 토론시간 충분하게 드릴 텐데요.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줍시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오늘은 박형수 간사님 그리고 김민전 위원님, 김승원 간사님 그리고 우리 쪽에서……

○박형수 위원 우리 쪽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이.

○주진우 위원 우리 쪽이 됩니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 한 분 더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형수 간사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도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먼저 하고 간사들은 나중에 합니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안 하시겠습니까? 그만하시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관례대로 하는 것으로 해요.

○김승원 위원 압축해서 하세요.

○김민전 위원 관례를 지키셔야지요.

○박형수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김민전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아니, 박형수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왜 내가 먼저 꼭 해야 돼요, 그 순서를?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은 서영교입니다.

자, 박형수 간사님 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알아요, 서영교인지.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박형수 간사님 하십시오.

안 하시겠으면 그만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형수 위원 아니, 그걸 무슨 꼭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이,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발언 순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분 더 하겠다고 해서 한 분 더 드렸으면 그 순서에 맞게 하셔야지.

자, 시간 넣어 주세요.

○박형수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할 때는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어요.

○위원장 서영교 박형수 간사님 마이크 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박형수 간사님.

○박지원 위원 그렇게 안 해 왔어요. 내가 제일 오래 있었어.

○박형수 위원 아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박지원 위원님, 통상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은 간사가 마지막에 해 왔지요? 참 별의별……

○김승원 위원 시간 흘러갑니다. 하세요.

○위원장 서영교 토론을 마지막에 했지 의사진행발언을 마지막에 하지 않았습니까.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번 속기록 보세요.

자, 그러면 위원장이 저렇게 권한을 마구 행사하니까 힘 없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야지요.

○위원장 서영교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지.

○박형수 위원 진작에 그렇게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서영교 앞에 토 달지 말고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발언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박형수 위원 오늘 전체회의 공지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 12시 2분입니다. 새벽이지요.

아니, 전체회의를 공지하면서 오늘 새벽 12시 2분에 공지를 하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준비를 합니까?

○박지원 위원 다 우리는 준비했어요.

○박형수 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좀 끼어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안 끼어들게요.

○박형수 위원 그리고 의사일정을 정할 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이 의사일정을 안건을 정하거나 일시를 정하는 데 들은 바가 없어요. 위원장님 국회법 맨날 얘기하시더만 국회법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 간사에 국민의힘 간사는 필요 없고 민주당 간사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예요.

법안심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다 정해 났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우리 당의 정점식 의원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단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의사일정에 참여하라고 합니까?

저는 그거는 향후에 있을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는 그 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이걸 강행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를 분명히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토론을 했던 겁니다. 우리 들러리 선 것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좀 제대로 운영을……

1분만 더 주세요. 그거는 위원장님 할 수 있지요? 말 덜 끝났어요.

○위원장 서영교 말 끝났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중간에 방해해 해 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했잖아요.

○위원장 서영교 그만 드리도록 할까 생각하는데 오늘 첫날이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형수 위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 왜 강행 처리를 합니까? 공청회도 개최하고 피해자들 의견도 듣고 충분히 논의하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폐지를 정해 놓고 나머지 보완을 하려고 하니깐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마음을 다시 먹고 이 형사소송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조정 구성 신청을 합니다. 안건조정 신청을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안건조정 관련한 자료 주세요.

우선 박형수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우선 국민 앞에 사과,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공복인데 여덟 번이나 결석을 하고 의무를 태만히 점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라든가 사죄 요청 없이 계속 법안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 제가 모욕감을 느낀 거는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분명코 말씀드리는 건데 현행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 내용입니다. 특히나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예컨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 기록이라든가 또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모두 다 그것을 전자화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사건 관계인이든 피해자든 피의자든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해서 사후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수사의 책임은 사법경찰관에게, 공소 제기 및 유지 책임은 검사에게 지우도록 해서 사건 처리 지연이 안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게 뭔 의사진행발언이야? 아까 저기서 다 얘기한 걸.

○김승원 위원 아니, 아까 희한한 제도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박형수 간사님이 얘기해서 그런 건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여러 제도가 들어갔다는 점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법안1소위도 그렇고 사실은 진지한 토론보다는 법안 처리의 지연 혹은 방해할 목표로 하신 것 같고요. 오늘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

되자마자 안전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또 90일 동안 또 논의하자는 주장을 하시는데 회의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법안소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점식 의원님만이 국민의힘의 최종안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걸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하거나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의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민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에 있다가 법사위로 지원을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전혀 법을 모르지만 시민의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상임위보다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합되는 것은, 위원장님의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기대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교육위와 비교해서 너무나 운영이 비법률적으로, 비법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위에서는 오늘 회의가 끝날 때 다음 회의를 약속을 간사들께서 그래서 미리 하십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일정을 공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어젯밤도 아니지요, 오늘 새벽이지요. 12시 2분에 공지가 오는 것을 보고 아니, 법사위가 어떻게 이렇게 비법치적으로, 비법률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 법안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제가 교육위에서는 이렇게 많은 법안을 심사하지는 않았는데요. 한번에 올라오는 법안이 타위원회 법안까지 합쳐서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미리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공부하고 옹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위만 해도 미리 심사보고서를 위원회 차원에서 주시고 그 위원회 차원에서 주신 걸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또 한번 거르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공부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아, 미리 다 아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 전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말 눈 다 감고 법을 마구 내려쳐서 만들자 하는 얘기와 다를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전문가들만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고 가서 모르는 분들에게 아, 이런 것이다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그냥 획 넘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 법을 어떻게 알고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아름다우신 위원장님께서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도 좀 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답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어제 법안소위가 몇 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약 11시 30분까지 진행되었습니
다, 밤 11시 30분. 그리고 전체회의 공지는 법안소위에서 진행된 법안들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 또 우리 행정실에서 그 내용을 쪽 정리해서 올리고 그러면서 전체회의 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임을 다시 한번 김민전 위원님께도 알려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법안심사소위를 여러 번 해 왔고요. 어젯밤 하루 종일 하겠다라고 서로가 이야
기가 되었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들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11시 반 늦게까
지 하고 그것을 행정실에서 또 전문위원들이 정리하고 나서 12시 2분에 여러분께 알려
드렸으니 시간이 촉박하다 하시지만 열심히 해 온 그 뒤 조치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전 위원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특검법도 아마 여야가 합의되면 오늘 논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상임위 법이 벌써 지방선거 전에 다 합의
된 안들입니다. 이 타 상임위법은요 기후노동위, 교육위, 농해수위 등등 오늘은 9개 상임
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벌써 다 합의된 안입니다. 그게 지방선거 전에 합의가
되었는데 저희가 지방선거 하느라 못하고 뭐 하느라 못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안 들
어오셔서 저희 당 원내대표실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44건을 다 검토하
고 심사보고·검토보고까지 나왔는데 연기해 달라고 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실 때
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원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만큼은 민생들 법안이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 중심으로 우선 검토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검토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대로 의원님 실로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보시면 좋기도 하겠으나 참,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어 그러한 단점
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밤을 새워 해도 아직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답
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일찍, 최소한 보내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그
렇게 해 보도록 하는데, 뭐 해 보셔서 아실 텐데……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짜여진 각본 아니오? 어젯밤에 늦게 했으면 내일
심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을? 꼭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생키
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교 어젯밤에만 심사했습니까? 7월 초부터 심사했습니다. 왜 안 들어오셨
어요, 그동안?

○곽규택 위원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니까 안 들어왔지요, 우리가.

○박형수 위원 아니, 법사위원장을 서영교 위원장이 하니까 못 들어온 거지.

○위원장 서영교 지난주 금요일에도 내가 전화드렸는데 또 안 오시고.

자, 그래서……

○박형수 위원 법사위원장 안 했으면 우리가 벌써 들어왔지.

○위원장 서영교 아, 내가 법사위원장이 아니었으면요?

○박형수 위원 벌써 들어왔지요.

○위원장 서영교 아이 참, 서운하네.

서운함을 꼭 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사위를 처음 오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요. 본회의가 있는 날이면 그 전날 법사위는 무조건 열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 전에 보내야 되는 국회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전날은 법사위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위법을 이렇게 많이 상정했냐라고, 검토할 시간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의사일정 한번 보십시오, 이 타위법이 언제 넘어왔는지. 법사위 회부일이 다 기재돼 있는데, 올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조금 오래된 것은 작년 12월에 넘어온 법도 있습니다. 이미 검토보고서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당의 정책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다 해서 의견을 다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절차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소송법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참 여러 가지 방해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검찰을 옹호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게 옹호하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을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로 만들어 가지고 사기 대선 치르고 그다음에 397억 손해 내게 생겼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부패 대통령 만든 건 누구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몇 개 받고 있어?

○김용민 위원 검찰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받아들인 후과가 결국에는 이렇게 됐고, 내란 저질러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까지 제일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곽규택 위원 할 말이 또 없구나.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내란이야. 그만 좀 끊어 드셔.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검찰 그만 옹호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곽규택 위원 보완수사 폐지를 논의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김용민 위원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권과 기소권 등등 수많은 권한을……

○박형수 위원 이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김용민 위원님, 저를 향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마지막 마무리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등 모든 권한을 다 독점해 가지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왔어요.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 절대 놓지 않으려고,

마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이 절대반지 놓치지 않으려고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 함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김용민 위원, 님은 사람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좀. 안 그래도 내가 그 이야기 하려 했는데 님았어!

○**김용민 위원**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억지를 쓰시더라도 참고 인내하시고 오늘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지금 안전조정위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손을 자꾸 드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러면 위원님은 토론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할까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상현 위원** 일단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한 1분만 하시겠습니까?

○**윤상현 위원** 아니, 3분은 주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또 이쪽도 해야 되는데.

○**곽규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서영교** 지금 안전조정위원회를……

○**윤상현 위원** 아니, 안전조정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3분 한 분씩만 더 드리고 안전조정위원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여당 간사위원님께서 국민의힘 위원들 보고 사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사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17대 국회에서부터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항상 제2당 몫 아닙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해진 국회 운영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관례였습니다. 심지어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후반기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 국민의힘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운영합니까? 전반기 후반기 전부 다 의장,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니까 우리가 과거의 전통을 환기시키고 아름다운 전통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박형수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전혀 협의가 없었다.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사위원들끼리의 협의를 꼭 거쳐 주십사…… 오늘도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 공지한 것 보면 10시에서 또 10시 반으로 연기됐습니다. 저는 이 연기된 이유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하고 연결돼서 그것 때문에 늦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더 예측 가능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민주당이 국민과 역사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도 또 한번 드립니다.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전체위, 딱 2박 3일 정말로 입법 벼락치기 작전에 돌입한 듯한 느낌…… 그래서 결국 어제 법안심사소위도 모든 게 우리 당 위원들의 의견은 들리었고 또 토론도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위해서 달려가는 국회의 모습이 정말로 국회와 국민과 역사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고 안건조정위 가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국민의힘께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우선 이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제안과 목소리를 내 주신 피해자들, 시민단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많은 숙의가 가능했구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보완책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나은 형사 절차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왜 논의되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권보장과 실제 진실 발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에서 강력한 검찰개혁이 추진되게 된 것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했던 문제들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기관의 힘을 뺏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혹시 균형을 잃고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 잘 자리 잡으려면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해서 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관한 권한 독점한다면 국민 피해 없도록 수사에 대한 강력한 협력 의무, 경찰의 수사종결권 제한 등 견제장치도 필요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7대 범죄에 대하여는 전건송치하기로 했고요. 그 밖에도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 담보하는 구체적인 방안, 피해자 이의신청권,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검찰에 대한 면담권과 검사의 사실관계확인권 등을 함께 논의해서 내용에 담았습니다.

물론 오늘 개정안이 국민들의 우려를 모두 불식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편인 만큼 한 번에 모든 걱정을 다 털어내는 개혁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더 좋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의 이런 논의에 대해서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고 또 이제 와서 계속 문제 제기만 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충분한 논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피해자들의 목소리 듣고 시민단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좋은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그동안 소위를 몇 번 하셨습니까?

○김승원 위원 여덟 번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소위 여덟 번 했습니다.

간담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김승원 위원 열세 차례 한 것으로……

○위원장 서영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열세 차례가 훨씬 더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간담회만 열세 차례를 넘게 했고요 소위만 여덟 번을 했습니다. 시간으로 한다면 엄청난 시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된 저희 법사위 상임위의 활동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판 FB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던 것을 중대범죄수사청이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넣어 놔줍니다.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이용해서 하던 수사를 경찰을 이용해서 수사하진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보완수사 요구 제도를 이 형사소송법에 거의 완벽하게 넣어 놔다는 말씀 드리고, 기존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자,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가 이 법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경찰이 암장하거나 폭주하거나 은폐하거나 연루되어 있을 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오히려 그 경찰을 수사할 수 있게도 만들어 놔다는 말씀드리며, 이 과정 속에서 검사가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수사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도 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형사소송법 체계가 잘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첨단화된 시스템, 첨단화된 과학수사 기법이 전부 다 이 형사소송법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등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2의 1항에 따라 안전조정위원회구성요구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대하여 이에 따라 안전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구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지금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들을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 그

리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승원 간사님과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님께서도 오늘 오전 11시 40분까지 안전조정위원회 위원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정위원 선임과 안전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용민, 박지원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안전조정위원회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는 김용민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조정위원장대리 김용민 안전조정위원 김용민 위원입니다.

안전조정위원회는 오늘 김용민·박은정 의원, 김한규 의원, 김승원 의원, 김남희 의원, 서영교 의원, 손술 의원, 차규근 의원, 홍기원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법안제1소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이를 통합·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리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개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을 수사주체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둘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대상 및 범위를 정비하면서 검사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사 지연이나 권리침해 등이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용민 위원님 그리고 박지원 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조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적약자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260조에 재정신청의 대상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범죄의 고발인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범죄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발인의 의사에 기해 수사 및 재판절차가 계속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가 있고 또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에 고발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신청권을 확대할 경우에 다수의 학부모가 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지속적으로 고발, 재정신청을 반복하는 것 같은 민원성 재정신청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대상을 고발인까지 넓히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회적약자 범죄의 경우에도 우선은 담당 공무원과 같은 법상 신고의무자로 재정신청권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공감하지만 혹시 모를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법안 245조의13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했는데요. 지금 내용에 필요한 경우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할 때 공소제기 시점의 피고인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센터에 주민조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공소제기 시 몰수 구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차적조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기관고발인이 소추요건인 사건에서 고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 고발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자료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의 대상에 공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도 포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또한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두 가지 정도 수정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먼저 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인데 저희가 논의한 바로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게 되니까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가 청구하도록 이견 없이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조문을 보고 혹시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면 검사는 검토도 없이 무조건 청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217조 2항인데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안드릴 부분이 있는데 어제 소위에서 개별 법에 따라서 수사권이 있는 특별검사 또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소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반 형사소송법상 검사와 같은 권한이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서 특별검사 등은 경과조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 논의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직무와 권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1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2호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에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 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차장 및 수사처 검사’ 이렇게 부칙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검사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공소청 직원들이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지명수배망을 활용한다든가 또 위험한 인물을 검거할 때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할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여기에 4항을 추가를 해서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 가지고 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2항을……

○김한규 위원 2항 후단만 바꾸자는 거지요.

○박은정 위원 2항 후단을 바꾸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김한규 위원 원래 제가 발의했던 안하고 비슷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단만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마이크를……

○김한규 위원 죄송합니다. 발언권이 제가 없긴 한데……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박은정 위원 우선은 지금 제가 김한규 위원님의 문제의식에는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떻겠는지, 그렇게 뒤에 단서까지 붙여 가지

고 하면 문구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의견은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토론은 정지하시고, 김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저도 그런 문구도 생각을 했는데 2항 앞단에 보면 이미 경찰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면 검사가 다시 한번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거의 동일한 표현 내지 유사한 표현을 쓰는 거라서 약간 중복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내용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신청하면 검사는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문구가 되어 있어서 고치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바꿔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김동아 위원** 그 표현이 일반 압수영장이나 다른 데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법경찰이 압수할 때 나와 있는 일반 표현이어서 215조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박은정 위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의식이 그렇다면 저는 검사가 판단을 하는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곽규택 위원** 정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조문을 만드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조문이 되겠어요?

○**김승원 위원** 문구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주진우 위원**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서영교** 김한규 위원님 토론이 있었고요. 박은정 위원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박은정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잠깐만요, 박은정 위원님. 이 내용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좀 정리를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이 법안 전체에 대한 토론시간 따로 있지요?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토론이 마치고 나면 의결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토론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위원** 다시 법안에 대해서 토론이 없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예?

○**윤상현 위원** 다시 법안에 대해서 토론이 없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예, 다시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은 없고요.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안이 올라왔고 이에 대한 토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을 하셔야 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표결이예요?

○위원장 서영교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3분밖에 안 줘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여러분이 안 들어오셔서 이쪽에서 하실 때 3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때 들어오셨어야지요.

○박형수 위원 우리는 계속하면 돼, 계속해.

○위원장 서영교 아닙니다. 토론은 제가 시간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한 토론이기 때문예요, 간사님, 5분으로 하시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일단 5분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일단? 아니 표현을……

○김승원 위원 원래 5분과 3분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5분은 원하시는 분 하고 3분은 원하신 분에 한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5분, 3분.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박형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5분, 3분은 국정감사나 할 때 주질의, 보충질의로 할 때 5분, 3분으로 하지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언제 5분, 3분, 2분 이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나가서 합의 보고 오실래요?

○박형수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나가서 협의하고 오실래요?

○박형수 위원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5분으로 그냥 해.

○위원장 서영교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간사님께서 5분 제안하셨군요. 그리고 3분은 보충질의로 제안을 하셨군요. 그러면 두 분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 해야 될 타위법이 상정되고 그것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곽규택 위원 뭘 통과시켜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김승원 위원 70여 건 해야 됩니다, 70여 건.

○곽규택 위원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돼요.

○위원장 서영교 타 상임위에서 방해하러 들어오셨습니까?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위원장 서영교 기본은 하셔야지요.

○곽규택 위원 토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면 제때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곽규택 위원 제때 들어왔잖아요, 지금. 법사위원장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올 때까지.

○김승원 위원 꼭 위원님은 어제 1소위도 안 들어오셨잖아요.

○박형수 위원 아니, 아까 간사하고 5분 그냥 하기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5분, 3분이야? 김승원 간사님, 아까 5분을 그대로 하기로 했잖아.

○위원장 서영교 여기서 각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손 들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아까 다 손 들었는데 뭘 또 손 들으라 그래, 진짜. 참, 정말……

○위원장 서영교 말이 참 많으시네.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국민은힘은 다 들었습니까? 박은정 위원님 그리고 김용민 위원님, 손솔 위원님.

그러면 순서를 오늘은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5분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게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들어와서 민주당 위원님들 토론하는 것 보니까 세부 문구나 세부 절차 하나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범죄자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진우 위원 범죄자와 그 가족은 처벌되지 않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사의 속도에 있어요. 보완수사권 실컷 지금 얘기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서 다른 기관에 하면 되지 않느냐, 또 다른 데 다른 절차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요 증거를 뺏히 보고서도 다른 기관에 넘겨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 사건에서 검사도 그렇고 수사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중요 사건이 있으면 왜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합니까? 범죄자가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건 죄도 안 되고 당연히 범죄자는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도전이 필요한 거고 수사할 때 증거를 본 사람이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을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범죄자를 잡을 수가 있고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제도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것은 중수청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또 받아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경찰이 하다가 또 검찰에 넘어왔다가 또 보완수사요구를 해 가지고 또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에 범죄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강도나 강간이나 살인 사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단순히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가 완전 범죄처럼 증거를 먼저 지워서 빠져 나가는 범죄자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안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형사사법 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최초 수사하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대폭 강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완이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를 잘 해야겠지요.

○주진우 위원 지금 이번의 경찰의 수사의 장운기 사건이 경찰 수사의 현재 현주소를 정확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여 교사 몰카를

한 학생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그 휴대전화를 없앤 사건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 사건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상적인 상황이면 못 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오히려 반대로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식, 더 견제받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걸 법무부장관께서 인터뷰하실 때도 제가 인터뷰 자세히 읽어 봤거든요. 저랑 똑같은 우려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그 우려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위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사건 처리가 점점 늦어지고 있고 지금은 과거보다 사건 처리에 두세 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 통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굉장히 사건 지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응급실 뽕뽕이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완수사권을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지금도 가뜩이나 복잡해 가지고 기관들끼리 사건을 막 핑퐁 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생색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하면서 수사권 충돌이 일어나고 또 약자나 서민들이 피해 보는 사건은 귀찮거나 혹은 또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법이나 절차를 잘 몰라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지금 사건 처리 시한이 두 배, 세 배 늘어났는데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처리 시한 통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명확히 예측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지금……

○**주진우 위원** 이걸 통계로 딱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완수사요구 그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게 했고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부족합니다. 이것은 장관으로서도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이고, 대통령 거부권 건의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또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따로 거부권을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랑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증거를 폐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수사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수사 신속하게 하는 것 필요하긴 하지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단계는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보완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완수사요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지요. 검찰에 넘어와서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 경찰한테 보완수사를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용의 미를 살려서 더 신속하게 수사하면 되는 것의 문제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찰과 검사들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가 좀 필요합니다.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잘 정착시켜 주실 책임이 장관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김건희 주가조작 봐줬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그렇게 봐줬습니까? 그래서 청주시의원 최영중 사건 이 사건을 그렇게 영장 기각해 가면서, 영장 반려하고 기각해 가면서 수사 하나도 못 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채 해병 사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까? 어느 하나도 땃땃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예요.

그러니 검찰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제가 계속 늘 강조하지만 검사 조직이나 검사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이 집중된 권한이 반드시 부패하고 거기에 정치검찰까지로 나아가는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장관님, 이거 하나 볼까요? 이 자료 보셨어요, ‘형사소송법 1소위 통과안에 대한 Q&A’?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게 대검에서 오늘 배포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장관님도 지금 모르시는 내용을 대검에서 1소위 법은 참 나쁜 법이다라는 취지의 Q&A를 이렇게 많이, 지금 대검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수사 속도가 중요하다면서요.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거 만들고 있게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졌다면서는요? 정해졌는데 검사가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공직기강 강조하지 않습니까? 공직기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검사는 국회 위에 있으려고 하고 정부 위에 있으려고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아직도 그걸 정신 못 차리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강하게 질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안조위 때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조의 7항에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해서 검사의 피의자 면담권을 저희가 신설했고 그 다음에 245조의 13에서도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면담권을 신설했습니다. 이 각 조항에 현재는 변호인의 조력권 등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검사를 면담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사피의자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석상은 충분히 그러한 권리는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명문화해서 규정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 방금 혹시 들으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검사의 면담권, 피의자 면담권이 지금 인정이 되는데 그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다시 말해 변호사가 대동해서 동석해서 조력을 할 권리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기는 한데 이것을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은 그래도 명문화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이신데 혹시 장관님은 여기에 대한……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분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명문화를 명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게 장관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명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장관님, 민주당의 입법 폭주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땠습니까? 대법관 증원했지요. 법왜곡죄 신설했지요. 재판소원제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검찰청 폐지했지요. 안 그렇습니까? 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합니다.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2박 3일 입법벼락치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런 건 상상도 못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법 폭주한 적 있었지요. 그러나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입장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부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님들의 입법 과정에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은 어차피 입법부에 속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다 못해서 지금 휴가 중에 있는 구자영 검찰총장대행이 정말로 이것은 진실이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질 거다 이런 식으로, 조용한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어떤 입장이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대검 차장의 입장문은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다만 일선에서 또 특히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여러 검사들의 그런 우려사항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다 듣고 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도 그런 입장에서 또 누구보다도 법체계를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검사가 보완수사권 가진 게 검사를 위해서 있습니까? 경찰이 부실수사, 축소수사를 할 때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서도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오셨지요.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이 이제는 나 모르겠다. 더 할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 단계에 온 거 아닙니까?

장관님, 장관님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도 본인을 지지하고 찍어 준 분들, 그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만기친람 식의 국정 운영하십니까? 최근에도 부동산 대토론회 하셨습니다. 이 문제 정말로 많은 여성 단체, 사회적 약자, 장애인 단체, 아동 단체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면 대통령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대토론회 정도는 하셔야지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하는 장관이고 측근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국회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라든가 또는 관계 단체의 여러 의견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법사위원님들이 많은 간담회라든가 또 면담을 통해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실 것입니까, 아니 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건 일단 국회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 저는 재의요구권 건의한다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면 저 같으면 다시 한번 국회 논의에 붙여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을 진정 위하는 측근 참모의 역할이다.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하튼 많은 대통령들의 정말 가까운 참모도 있었지만 그런 전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저라면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장관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말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 주시고, 장관님께서 한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실 정도는 되신다.

전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에 이끌려서 그거에 따라가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반드시 한번 보십시오. 역사는 절대로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의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법사위에 전달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입법에

이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안 하시겠지요?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판결도 이미 났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판결도 났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서영교 검사가 이것 수사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수사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해서 검사가 유죄로 기소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검사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유죄를 황제수사까지 해서 다 묻었잖아요.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어서 창원지검에서 수도 없이 수사했어요. 윤석열·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창원지검이 기소했습니까? 안 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서영교 다 묻었어요, 검사가.

또 윤석열 내란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수사를 안 해요. 이게 경찰과 공수처가 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장님 하시겠지만 이미 검찰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무슨 수사가…… 지금 수사할 수 없습니까, 검사가?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도 부패·경제 문제는 할 수 있지만……

○위원장 서영교 지금 부패·경제 문제하고 보완수사 다 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미 입법은 정리된 겁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가 한번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검사가 수사를 잘할 것 같은데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그다음에 김학의 수사는 검사가 기소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당시는 수사·기소의 전권을 갖고 있었던 당시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전권도 다 갖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김학의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동훈 처남은요? 수사는커녕 다 묻었잖아요. 지금 오세훈은 이번에 1000만 원 나왔는데요. 이거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다 묻었잖아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이게 법안 토론입니까?

○위원장 서영교 윤석열 허위사실유포, 윤석열 허위사실유포 다 묻었잖아요.

○박형수 위원 아니, 이게 법안 토론이에요? 뭐니까? 의사진행이에요?

○위원장 서영교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곽규택 위원 특검에서 수사하게 돼 있으니까 사건을 넘긴 거예요.

○위원장 서영교 검사가 마치 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누가 묻었습니까?

이거 다 누가 묻었어요? 검사가 묻고 표적수사했기 때문에, 이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그러면 검사가 하던 수사는 없어집니까, 아예? 검사가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갑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찰……

○**위원장 서영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일반적으로 하고요. 중대범죄에 관련해서 중수청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한국판 FBI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를 보완수사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없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가 들어간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이 더 잘될 수 있게, 검사는 그동안 면담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하던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넣었으니 더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그러나 범죄자는 끝까지 처벌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솔 위원** 장관님, 10월 2일 앞두고 많이 바쁘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별히 바쁘지는 않습니다.

○**손솔 위원** 그렇습니까? 10월 2일에 역사적인 공소청 출범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 논의가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이 저는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준비하고 더 꼼꼼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법사위 후반기가 꾸러지고 나서도 국민의 힘 위원님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하는 데 저는 큰 부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1소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으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피해자 지원 단체와 자주 소통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때 피해자 권리도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 내용을 담아서 저도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피해자 지원 단체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중요했던 것 하나가 21년 이후에 무제한 보완수사요구 때문에 사건이 길어진다. 사건이 평평이 되지 않게 해 달라라고 해서 이번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요구를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한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피해자 지원 단체의 요구사항이 저는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는데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 사건을 중대하게 다뤄 주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내가 느낀 만큼의 피해 정도로 보지 않고 있다면 나도 반론을 제시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피해자를 객체, 그냥 기다려야 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봤다면 이제는 피해자들이 직접 개입해서 싸우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반론권을 잘 달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번 법안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싸울 수 있다, 근거를 알아야 논쟁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검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한 것, 검사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법안을 제출한 것에 제 입장에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고 나서 피해자 지원단체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서 하는 과정이 저는 국회의 속의 과정이 있었고, 이 법안을 저희가 오늘 논의를 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면 이후에 이 법안이 넘어가더라도 시행령이나 수사준칙 이런 것에서 또 손봐야 되는 것들,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에서 또 피해자지원단체의 의견을 회람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실 시행령에서 디테일이 많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손술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피해자들의 소중한 요청사항이 들어갔습니다. 피해받아서 아픈데 수사 과정에서 또 아프지 않게, 그러나 정의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형사소송법에 들어가서요 아주 의미 있는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피해자들이 아프지 않게 그렇게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제도 보완을 해 나가고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54년 이후에 70년 만에 대전환점’, 맞습니다. 저도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법학을 한 사람이면 법률에서 가지는 비중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아시고, 얼마나 신중하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충분히 아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러한 것들의 논의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사실 바뀌는 조항이 수십 개를 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아예 카운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데 야당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2박 3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거의 이게 속도 광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법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옛날 왜 이 법률을 그렇게 금지옥엽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는 딱 그 식인데 그거 하

나하나 바뀌면 그 자구 하나 해석하려고 죽기 살기로 그래서 한 점수라도 더 따려고 그리 애를 썼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약간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요.

제가 아마 행정처장님한테 여쭙봤는지 아니면 차장님한테 여쭙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마음에 안 들면 심판원으로 바꾸고, 판사들 판결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심판관으로 바꾸고, 아니면 내가 좀 폼나게 호칭을 가지고 싶으니까 국무총리는 부통령으로 바꾸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처장님? 법률로 그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쉬운 답 아닙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우리 헌법에는 국무총리라는……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대법원을 대심판원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건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불가능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위헌이지요. 그건 누구든지 다 압니다. 법과대학 1학년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소청이라는 그리고 헌법에는 분명히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단어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검사들은 공소청이라는 기관에 소속될 겁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약간 어떤 느낌이나 하면 흥길동 느낌이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의 기관장은 검찰총장이라고 부를 거랍니다.

장관님, 이게 합리적으로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소청장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또 이런 말도 여쭙봤습니다. 제가 소위에서 법무차관님한테 ‘특별검사는 왜 하나, 수사·기소 분리가 그렇게 지고지순한 선인데 왜 하나?’ 이랬더니 효율성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거기는 효율성이 따라도 되고 일반범죄는 효율성이 안 따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하시지요?

그리고 수사·기소가 꼭 분리돼야지 선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남겨 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여쭙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까요? 잘 답을 못하세요.

어떻습니까, 장관님은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권한을 남용해 갖고 그리고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실망시켜 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반성에서 문제의식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문제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의식은 21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이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꾸는 것이 과연 선인지 아닌지도, 아까 검사님들 자료 올려 놓은 거, 김용민 위원님이 주시는 그 자료 보면 이게 과연 선일까라는 의심까지 드는 거지요.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목적도 분명치도 않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게 분리돼야 될지, 한쪽에서는, 특검에서는 합쳐져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분리돼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합리성도 없고 논리적인 수미일관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지 민주당 극렬 지지층의 복수심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고요. 전당대회에서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 복수심을 만족시켜야 되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지에서 이렇게 계속 몰아치기식의 절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갖다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그 권한을 갖고 누구는 표적 수사하고 누구는 봐주기 수사하고 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정의가 왜곡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쥐고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국민 신뢰를 붕괴시켰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 같은데 아닙니다. 놀랍게도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법개혁특위 간사였던 윤한홍 의원 역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해야 한다’, 주장을 했고요. 토론회를 주최한 객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정종섭 의원도 축사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왜 반대하십니까? 아까 국민의힘 어떤 위원이 경찰 암장 사건, 장운기 사건을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지금 구속되고 처벌될 겁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 397억 선거비용 반환하게 했던 그 사건,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 짓, 검사 당시에 정치검찰이 윤우진 사건을 저렇게

뒀었고요.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해 줬다’ 이렇게 한 저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유죄가 났습니다. 저 사건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 없다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었는데요.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을 보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윤우진은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9월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1심이 선고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2012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던 사건을 검찰은 여섯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태국으로 도망갔다가 강제송환된 송환된 윤우진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저 사건을 무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서 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저 사건은 지금 구속돼서 유죄선고가 났습니다.

누가 압장을 했습니까? 그 압장한 과정에서 관여했던 검사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오늘도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경찰이 사건을 지연할 것이다, 국민 피해가 늘어날 것이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과정에서 검찰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떠드는 말이 국민 피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최근의 경찰청 자료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보완수사요구 평균 처리기간이 56.6일이고, 보완수사요구의 83.9%는 3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검찰과 보수언론이 끝없이 얘기합니다. ‘보완수사요구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가지지 않으면 수사는 암장되고, 지연되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검찰발 언론만 씁니다. 저런 경찰 자료는 제대로 언론 보도가 안 됩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요구의 실질화 방안을 더욱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1개월 이내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더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긴급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기록이 경찰에 넘어가지 않도록 검사가 사건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완을 통해서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보완수사를 경찰에게 하도록 하는 제도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 사건을 그대로 검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사건번호를 주임검사에게 그대로 뒤서 검사가 사건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하도록 했고 그 기록을 촘촘히 챙기도록 했습니다. 199조의2에는 모든 수사 관계의 서류와 증거물을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수사의 완결성,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는 설명을 국민들께 해야 합니다.

장관님, 법무부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민에게 설명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 이 법이 국회 통과되고 나면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부도 최대한 협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박은정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오랫동안 저희들이 숙의하면서 대안을 만들었거든요.

사건은 왜 핑퐁이 되나요, 검사하고 경찰 사이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개 최초에 수사를 한번 하게 되면 경찰 같은 경우도 일종의 확증편향 내지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건이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면 보완수사를 하게 되지만 대개 최초의 판단과 동일한 결론을 갖고 다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핑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경찰이 송치를 했고 그 내용을 검사가 받았고 그런데 여기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그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주인을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사에게 이 사건을 책임질 수 있게 사건번호 꼬리표를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를 달고 이것을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 보완수사요구 내용이 추후 보완으로 해서 바로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해 놔습니다. 그래서 핑퐁하지 않게 핑퐁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번에 잘 보완해 놓았으니까요 그것 한번 더 보시고 국민들께 잘 알려 주시고 국민들이 수사 과정 속에서 피해 보지 않고 이 제도를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치안에 실패한 국가인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민전 위원** 사실 국뽕 유튜브 이런 것 많이 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치안이고요 또 하나가 청계천이고 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자랑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국뽕 유튜브의 소재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치안이 다른 나라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외한으로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치안이 잘되고 있는데 왜 이 시스템을 70년 만에 다 바꾼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우리 국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국회법의 법률 규정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무수한 관행들이 들어가서 운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많은 관행과 선례와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딱 바꾸면 하루아침에 그 관행이나 소위 소프트웨어가 생기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요.

○**김민전 위원** 그렇지요. 왜 잘되고 있는 것에 그 많은 노력을 다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중수청에 대한 위원장님의 기대를 제가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형 FBI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FBI는 어디 소속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미국 법무부에 속해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법무부 소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무부는 검찰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검찰 소속입니다. 행안부 소속이 아니에요. 여기는 검사들이 주로 수사를 하는 것이 FBI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FBI가 한국 건너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행안부에 검찰조직을 집어넣는 나라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엉망인 국가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1년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에, 앞에서 김태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사법제도가 더 잘 굴러갔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당시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검찰에 일부 기소권을 남겨둔 게 원인이 됐습니다.

○**김민전 위원** 미제등록 사건 더 늘었고요 전세사기 더 늘었고요 마약사범 더 늘었고요 또 보이스피싱 더 늘었고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속도는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사경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제가 국회 오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만나 본 적도 없고 가 본 적도 없습니다. 검사들을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특사경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음식집 하는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어요. 위생 점검한다고 오고 다 할 텐데……

그동안 특사경은 소위 누가 관리하는 역할을 해 왔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있었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렇습니다. 검사의 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내용적으로 보면 긴밀한 상호협력 관계로 보면 될 겁니다.

○**김민전 위원** 검사의 지휘권이지만 협력관계다, 상하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서로 견제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사경이라는 존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특사경이 얼마나 위협적일 수 있는가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야, 특사경에서 출동하나 보다. 다 숨자. 빨리빨리 숨겨’ 이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관련 규정은 어쨌든 검사의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해 주셨고 또 전전송치 하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민전 위원** 해 보지 않고 그냥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

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고요. 이게 우리 민생에 하나하나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특사경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영주가 생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굉장히 걱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셨는데 왜 재판 진행을 안 하고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기일 지정 문제는 담당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속하기 때문에……

○**김민전 위원** 그러나 법원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담당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라서 행정처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안은 전부개정안은 아닙니다. 일부개정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기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검사들이 법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판검사가 공판 들어가면 법복을 입고 가지요.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률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특수사건 했던 검사들이 자기가 했던 사건의 공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양복을 그대로 입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게 약간 부조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무슨 말이나 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법률가의 영역은 아닌데 또 검사는 수사를 하면서 내가 법률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게 좀 모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오히려 어떤 검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사를 하지 말고 법률가로서 수사지휘, 저는 보완수사요구든 수사지휘든 용어는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수사지휘를 하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우리는 법률가로서 기소, 불기소를 따지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는 의견이 사실은 대다수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문제로 가니까 그리고 수사를 완전히 못 하게 한다고 이러니까 본능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첫째, 처리기간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그다음에 증거인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그것은 장관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그것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리기간 지연은 사실 지금 현재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요 검찰청에서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사건이 많아요. 그것이 그러면 과연 보완수사권의 문제인가, 사건 처리가? 오히려 보완수사요구를 해 버리면 검찰 표현대로면 사건 떼지는 구조, 내 사건이 아니게 되는 구조, 3개월 초과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거지

요. 그런 운용에 있어서의 미스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번 법안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그다음에 증거인멸 얘기를 하는데요. 보완수사는 어차피 2차 수사입니다. 1차 경찰이 했던 수사를 기록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는 것인데 그 증거인멸의 우려를 걱정할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건이 있다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에 갓 쓰고 한양 걸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급박하면 유선상으로도 연락해서 서로 같이 협조하고 하면 되는 문제지요.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느냐, 그 체제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법안에도 그런 고민이 많이 담겨져 있고 향후에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계속 의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세 번째는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스크린이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검사가 기록을 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나면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 고소인을 직접 만날 수만 있게 해 준다면, 거기서 서로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한데 경찰의 수사가 기록하고 좀 다르네. 기록에 쓰여 있는 것은 A라고 쓰여 있는데 왜 피해자는 B라고 얘기를 하지?’ 그 정도만 보장을 한다면 그 내용을 바로 옆에 있는 검찰수사관한테 ‘당신이 조사해 보세요’ 하는 것보다 비록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왜 효율이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지는 검찰이 그동안 해 왔던 걸 보면 정확히 우리가 해결책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한테 얘기해서 ‘자, 이렇게 B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 조사해 봐’ 이렇게 하는 거면 충분히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경찰의 비리가 있다면 상급기관이나 다른 수사관청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님재판…… 수사·기소 분리가 선이냐라고 얘기하는 일부 야당 위원 말씀에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원님재판은 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수사·기소·재판까지 다 하는 게 악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것하고 똑같아서 이건 도저히 토론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이 양복 입은 수사관 그다음에 법복 입은 법률가로서의 사법기관 같은 그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정치검찰로서 역할을 해서,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비효율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명제하에 출발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법안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효율을 충분히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들의 공세는 부당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차제에 사회적 약자들, 아동학대범죄라든가 가정폭력범죄라든가 일부 전권송치가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기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1분만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오늘은……

○김기표 위원 그러면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회적약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억울한 사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 불송치 의견이다 하면 가서 이유 때 보고 이의신청서 써야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도,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일반적 사회적 약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변호사 선임할 비용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검찰로 사건이 가서 ‘검사님, 내 사건 한번 더 봐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통로, 그것이 이른바 일부 사건에 대한 전건송치고 그것이 이번 법안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장애인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는 이미 있었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그다음에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검사들이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만 기록을 본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잖아요. 다시 기록을 봐서 ‘야, 이것 좀 이상하다’고 하면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서 ‘이 부분은 좀 수사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이번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같이 통과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최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기표 위원 장관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적 약자라도…… 그러니까 이른바 사법의 민영화라고 저렇게 선전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답을 주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하셨습니다. 마이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이번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불송치일 경우에 이의신청서를 불송치결정문과 같이 붙여 보낸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불송치일 경우에 이의신청서를 같이 붙여서 보내면, 이의신청서를 쓰면 바로 송치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자신의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도록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표 위원님 말씀처럼 성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아동폭력 피해자 그리고 살인 사건 등 이러한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해 놓았

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해 놓았고 이번 과정에서는 그 변호사가 불송치, 이의신청 그리고 그것이 송치될 때까지 그리고 재정신청할 때까지 변호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고 바로 그 내용을 또한 법무부의 규칙으로, 부령으로 담아 주십사라고 요청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규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광규택 위원** 국회를 통상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 같아요.

민의를 뭘니까?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해 보니까 반대가 55.3%고 찬성은 27.4%예요. 반대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단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진보·보수 성향 안 가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민변에서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이를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강제수사까지도 허용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64.9%입니다. 민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은 민주당 내에 검찰을 악마화하려는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 3명, 정청래 후보, 전직 테러리스트 아닙니까? 김민석 후보, 불법적인 후원금 받아 놓고 그것 가지고 배추밭 농사에 투자했다는 것 아닙니까? 송영길 후보, 전당대회 할 때 돈봉투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 검사들 잘못 때문에, 검사들의 권한 남용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악마화하고 있는 거예요. 보완수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법사위원장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 대학 다닐 때 처벌받은 이야기 맨날 하십니다. 그게 검사의 보완수사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 놓고 검사가 잘못해 가지고 본인이 처벌받은 것처럼 고래고래 고함을 쳐요. 도대체 이 법사위가 민의를 반영하는 곳입니까, 전과자들의 뜻을 반영하는 곳입니까?

형사소송법은요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이 형사법을 갖다가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 받아 가지고 고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에도 양심적인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의원님들 계세요. 그분들이 낸 법을 보면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시니까 수정안을 몇 번 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홍기원 의원안에 보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의 경우에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구속기간은요 검사가 열흘 할 수 있는데 열흘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면, 보완수사를 하면 첫 열흘 내에 간단하게 보완수사해서 기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보완수사요구로 가게 되면 10일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그러면 이 수사기관의 형소법의 규정 때문에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인권침해적인 법 아닙니까? 변호사로서, 검사 출신으로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검사한테 사경의 보완수사 이행 여부 관리의무 부여하고 보완수사기간을 1개월로 해 가지고 줄였다 하지만 불구속 피의자나 참고인이 불출석하면 어떡합니까? 1개월 내에 수사 보완수사요구 안 될 것 아닙니까?

또 검사가 면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면담을 할 수 있니까 경찰의 수사과정이 체크가 된다? 이 사람들에게 대한 검사의 면담 요구가 수사입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 출석요구 받은 사람들 안 나오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면담을 한다 한들 그 면담 결과가 증거로 반영될 수도 없도록 딱 규정에 못 박아 놔놔야요. 그래 놓고 무슨 면담을 합니까?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 문제부터 먼저 고민해야 될 그런 법을 만들어 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기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요? 볼까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위원장 민간 출신 위원장이요 전건 송치 필요하다, 검사의 보완수사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뜻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사임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임한 이후에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검찰개혁추진단 와해가 됐습니다. 그 국무총리는 지금 정부안 만들지도 않고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님, 국무총리가 정부안 만들어 온 적 있습니까?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한다고 해 놓고 시간 끝다가 마지막에 이것 못 하겠다고 지금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정부안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부의 입장은 저희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잘 전달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곽규택 위원** 그래 놓고 국회의원한테 책임을 돌려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우려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다음 대체토론하시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박은정 위원** 지금 곽규택 위원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으로.

○**곽규택 위원** 위원 발언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예요, 그게?

○**위원장 서영교** 그다음 진행에서 하십시오, 박은정 위원님.

또 서영교 위원장이 전두환하고 싸워서 치안본부에서 물고문도 당했고요. 검찰에서 온 갖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 되겠습니까, 윤석열 앞에서는 꿈쩍도 못 하다가?

○**곽규택 위원** 자신 있으면 마이크 쥘 보세요, 한번.

○**위원장 서영교** 아니, 이게 원칙이 있어서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실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박형수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이성운 위원님 하시고 김승원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박은정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수사기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개혁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 권성동 전 의원님도 지금 수사받고 계 시는데 국민의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혹시 수사절차 지연이나 미흡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권 력남용과 전횡으로 인한 폐해로 인한 반성적 논의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기관 의 권력분립,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상 이 런 원칙이 잘 정착되고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져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를 통 제하고 견제하는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건의 암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통제장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사건이라도 전건 송치해야 된다 그 내용 개별 법으로 오늘 발의했고요. 경찰의 수사 적절하게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서 제도 세부 설계에서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남희 위원** 그런데 몇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현 재 증권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통일교, 신천지,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합수본이 꾸러져 서 운영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되면 검경 합동수사의 근거가 없어지 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합수본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법무부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이전까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 그 이후에도 검사들이 경찰과 합동수사하게 된다고 하면 증거능력상의 심각 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도기적으로 조금 사 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건은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고 공수처에서 공소를 전담하는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런 의미에서 검찰 안에 중대한 범죄든 특수한 범죄들을 수사해 오던 전문성 있는 그런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가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합수본 중에서 중수청의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합수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중수청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김남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지금 중수청법에는 수사 대상을 6대 중대범죄로 한정하고 있어서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으려면 중수청법에 관련 내용을 넣어야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한 시민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분명히 사회적 약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살인강도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 중수청 보완수사가 빠진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강력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마련하지 않으면서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범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수청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에 관련된 특별한 조직이 좀 더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아직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수청 조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그 부분들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관련 제도 세부 설계하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가 행안부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박형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개정안이 아니지요. 개악안이지요. 이 개정안은 형사사법 70여 년의 큰 변화를 지금 가져오는 그런 법률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민주당은 각본을 다 짜 놓고 순서대로 착착착 작전하듯이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안전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뭐니까? 여야 간에 첨예하게 다투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자 그래서 90일의 기간 동안을 줬어요. 그 범위 안에서 충실히 더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법안을 처리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게 안

건조정위원회를 만든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안전조정위원회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1시간여 만에 딱딱, 토론 기회 한 번씩 주더니 토론 종결하고 표결로 끝내자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안전조정위원회 왜 하는 겁니까? 요식행위로 만들려고 국회법에 안전조정위원회를 뒀습니까?

이제 보완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완수사가 인권보호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나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할 때 보완수사권을 남겨 뒀던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해 왔지만 보완수사권 남겨 둔 이유는 억울하다고 하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한 번 더 이것을 살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남겨 뒀던 겁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을 그러면 다 폐지를 해 버리면 대안이 뭐냐?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운 대안은 보완수사요구권입니다. 이 요구권으로 충분하다라면 저도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겠어요. 요구권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요구권을 존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헛갈려 가지고 지금 말이 안 나오네.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보완수사요구권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것을 공소청 검사한테로 기록이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다시 그 수사관한테로, 그 경찰한테로 가요. 그게 문제가 있어. 똑같은 결론을 또 낼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다시 수사했어요. 결국은 기소를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기소해야 되는 사람은 검사거든요. 검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수사한 것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수사를 한 경찰이나 중수청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직접수사를 못 하면 그것은 맞지 않으니까 의심스러우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불기소를 해 버리는 겁니다. 기소를 안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수사한 기관, 경찰이나 중수청의 말을 믿고 자신의 판단과는 다른 기소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 뒀야 된다.

아까 광규태 위원이 얘기했지만 피의자 면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지금 신설해 뒀어요. 오지 않으면 끝입니다, 강제수사를 못 하는데. 그러면 우연히 간 사람은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검사와 면담한 사람은 면담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완수사권 남겨 뒀야 된다는 이유예요.

아까 장관님께서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적수사 얘기도 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해소가 됐어요. 표적수사가 됩니까? 표적을 정할 수가 있어야지 표적수사가 되는 거잖아요.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는데 무슨 표적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우려가 다 해소됐다. 그런데 굳이 보완수사권까지도, 국민의 인권 보호, 다시 한번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 줄 수 있는 그 장치마저도 없애겠다는 것, 이것 도대체 뭘니까?

저는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60% 이상이, 아까 광규택 위원 얘기한 대로면 57%인가가 반대를 하고 있고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두 배 세 배 되는 사람들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겁니까? 설사 당론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론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재고해 봐야 되는 게 그게 정치권의 책무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도 면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실질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들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검사가 오라 그러는데 죄 지은 피의자가 순순히 가겠어요? 강제로 해도 도망가는 판인데. 정말 답답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피의자가 안 오면 그것은 범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지요. 피해자는 자기를 호소하기 위해 갑니다. 피의자는 경찰이 다 수사했고요. 피의자가 안 오면 그것 봐줍니까?

다음은 이성운 위원님 하시고 김승원 위원님 하시고 박은정 위원님은 아까 하셨으니깐 짧게 하시고.

○**광규택 위원** 박은정 위원 하면 저도 또 할 겁니다.

○**박형수 위원** 해야지, 당연히.

○**광규택 위원** 당연히 해야지.

○**박은정 위원** 하세요. 어제 소위에는 왜 안 오셨어요? 소위나 잘 오세요.

○**광규택 위원** 목소리 듣기 싫어서 안 왔어요.

○**위원장 서영교** 자, 조용히 하시고요.

○**광규택 위원** 보고 싶으면 따로 연락하시든가.

○**박은정 위원** 소위에나 오세요, 소위나.

○**김승원 위원** 웬만하면 출석하지 마세요. 안 계실 때는 그래도 참 차분하게 했는데……

○**곽규택 위원** 뭐라고요? 뭘? 목소리 듣기 싫어서 안 나왔다니까요, 제가.

○**김태규 위원** 도발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우리한테 시비를 거니까 그러는 거지. 발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놔 두시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발언 못 하게 막으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교** 곽규택 위원은 지금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이성운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성운 위원**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내내 소위에 참석하지 않다가 오늘 들어와 가지고 깡판 치고 동료 위원 막말하고……

○**박형수 위원** 이것은 전체회의예요, 전체회의. 이게 무슨 소위요?

○**김태규 위원** 지금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깡판입니까?

○**이성운 위원**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테러리스트, 전직 테러리스트라고요?

○**곽규택 위원** 전직 테러리스트, 몰라요?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그게.

○**이성운 위원** 본인이 뭘 인정을 해요?

○**곽규택 위원** 참 나,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이성운 위원** 작년에 국민의힘 모 당대표후보가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 테러라고 했어요. 테러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켜 아주 흉악한 분’이라고 하면서 테러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때 정청래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취하세요, 그러면.

○**이성운 위원** 저렇게 동료 위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오자 마자 막말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곽규택 위원** 취하세요. 본인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법사위원장 하면서.

○**이성운 위원** 장관님, 정청래 대표가 테러리스트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4선 의원이고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중진, 유능한 의원이십니다.

○**이성운 위원** 학생들의 순수한……

○**주진우 위원** 아니라고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곽규택 위원** 미 대사관에 폭탄 던졌는데 그게 불발됐어요.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이성운 위원** 말조심하세요.

○**곽규택 위원** 무슨 말조심을 해요?

○**이성운 위원** 아무리 그래도, 막 나간다 하더라도 저렇게 동료 의원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합니까?

○**곽규택 위원** 그러면 불러서 물어보세요, 정청래 의원한테.

○**위원장 서영교**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성운 위원님.

○**곽규택 위원** 법안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저런 막말에 대해서는 경고도 주시고 너무 심하게 하면 퇴장도 시켜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저는 이 방에 와서 막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장관님, 어제 1소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어느 검사가 그렇게 글을 넣었더라고요, 이프로스에. ‘범죄자 야호’, 이 법안이 ‘범죄자 야호’ 법안이라고 그러니까. 인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이성윤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검사들 이프로스에 글 올리고 총장 사퇴하고 또 고위직 사퇴하고 이런 쇼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행동 하면 꼭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검사 후배들하고 몇 번 얘기를 해 보면 지금 일선 검사들은 보완수사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미제가 검사실에 수백 건, 500건에서 많은 검사는 1000건도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다 해결할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검사들이 좌우간 매우 심각하게, 과로사하기 직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사들이 보완수사권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총력을 다해서 미제를 줄여야 할 상황인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도 아시듯이 정말 검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이성윤 위원 더군다나 총장이 말이지요, 오늘 휴가 중에 나와 가지고 ‘검찰 수사권 폐지에 깊은 우려 표명한다’ 하면서 ‘진실 은폐, 형사사법체계 무너질 것, 국민의 피해’ 이렇게 했어요. 이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체계가 무너지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게 될 리야 있겠습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지요.

○이성윤 위원 저는 검사들이 정말 이제는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검찰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는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검사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사단, 윤석열……

(「한동훈」 하는 위원 있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로요. 야당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주야장천 수사하고 김건희는 봐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검찰을 폐지시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초해 놓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폐지의 오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형사사법체계 무너뜨린다…… 스스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검사들이 뭘 하더라도 양심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들 행태 보십시오.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폐지돼도 할 말이 없고. 그때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검찰청 해체하라고였습니다. 검찰은 죽었다, 검찰청 해체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이런

게 검찰 수사 안 된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그리고 보완수사권 문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 주면 됩니다.

이런 요구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일선 검사들에게 잘 지도해서 가지고 이프로스에 글 올리고 사직 쇼를 할 게 아니고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당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고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과거 윤석열 사단이라든가 한동훈 사단이라고 칭했던 대부분의 검사들은 지금 핵심적인 수사 일선에서는 다 몰려나 있고요 상당 정도가 떠났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처리하고 있는 99%의 형사사건은 형사부 검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수청·공소청 설립되기 전까지 정말 뼈를 갈아 넣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사건 처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검사님들 응원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금방 ‘범죄자 야호’ 한 강백신은 범죄자 아닙니까? ‘재창이형’을 ‘실장님’이라고 해서, 증거를 조작해서 온 세상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귀로 ‘재창이형’으로 들립니다라고 해 놓고 자기네 기록에는 ‘실장님’이라고 바꿔서, 그래서

수사를 조작하고 수사한 자가 범죄자 아닙니까? 이 범죄자는 왜 그대로 법무부에 둥니까? 왜 검사로 그대로 둥니까?

그래서 ‘범죄자 야호’ 외쳤지만 이 범죄자는 꼭 처벌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김승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장관님, 오늘 국민의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범죄자는 웃고 국민들은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어이도 없었고 저는 사실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노동자 수백만 원 퇴직금 받으려고 그걸 한 것을 덮은 게 누구입니까? 엄희준 아닙니까. 노동자에게는 수백만 원이지만 수천 명이 모이면 그게 수십억, 수백억이 되니까 그 떡고물 먹으려고 엄희준이가 그걸 덮은 것 아닙니까. 범죄자가 웃고 국민이 눈물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산재사건 보면 대개 검사들이, 혹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업가 입장에서 산재를 입은 피해자 유족의 과실을 주장하거나 혹은 기업가의 무죄를 변론해 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권력의 이름으로 탄압한 것도 70년 동안公安부 검사들이 해 왔던 일입니다. 70년 동안 검사들 수사·기소권 갖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 역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가조작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투자자인 일반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가조작 덮은 것 그것도 역시 윤석열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남부지검 금조부 출신 박재벌이라고 있습니다. 검사 옷 벗고 1년에 100억 벌

었다고 합니다. 다 주가조작을 무마하거나 아마 그런 불법적인 변론으로 그런 돈을 벌었을 겁니다.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조세행정을 돈에, 뇌물에 팔아먹고 그 직무의 공정성을 해한 사람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했는데 당연히 체포돼야 되는데 그걸 막은 것도 또 누구입니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과 같은 힘 있는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수사·기소가 함께 있는 그 시스템에 의한 피해들이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약자들의 억울함을 구제해 주지 못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70년 만에 우리가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자꾸 보완수사권 폐지 갖고 이슈로 삼고 악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형사건 갖고 돈 벌지 못하게 만들자, 큰돈 벌지 못하게 만들자, 그런 형사소송법 체계 한번 만들자.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저희 뒤에 ‘흠흠신서’도 있지만 우리 형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정말 그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것이 돈에 의해서 아니면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그것만큼 국민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이번 형사소송법에 넣었지만 장난 치지 못하게 수사과정,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 없이 다 기록하고 전자화하고 또 압수수색, 검증할 때도 보디캠이라도 착용해서 중요한 것들을 다 촬영하게 하고 그것 역시 보관시켜서 사건 관계인이든 누구든 사후에라도 검증을 하게 하면 일반 사법경찰관도, 검사도 법왜곡죄가 무서워서 장난 치지는 못할 것이다, 왜곡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될 놈의 보완수사권 그것 지켜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프레임을 씌워서 왜곡시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겁니다.

이제 형사사건 갖고 돈 못 벌게 합시다.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오직 정의롭게 일하는 쪽에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로써, 예산으로써 밀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도를 하고 설계해서 한번 정의로운 선진 사법제도를 대한민국이 최초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법제도가 공정합니까? 정의롭습니까? 돈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미국 형사사법제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사법제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어느 선진국도,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정의롭게 잘 운용된다면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춘 그런 나라가 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런 자부심, 역사적 사명을 갖고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실제 시행될 때는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최종 통과되고 나면 그 후에 시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즉각 시정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관 검찰들이 그걸 이용해 갖고 많은 수익을 창출해 갖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사권을 이제는 경찰이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저희들이 입법적으로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2분만 하시고요.

곽규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들어 보고요.

○박지원 위원 저도 한번 할게요.

○위원장 서영교 예.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전에도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곽규택 위원님이 위원장님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의 법사위에 서도 동료 위원에 대한 인신 공격과 상대 당에 대해 모독하는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님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혐오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하실 수도 있고 비판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왜 동료 위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 위원,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른 의원과 다른 당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 법사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반기 내내 그래 왔습니다.

곽규택 위원님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경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누적된다면 법사위원을 더 이상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하반기의 법사위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사위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저희가 국정감사도 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는데 곽규택 위원님은 지금 소위에도 어제 참석도 하지 않으시고 이 개정안 심사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지 않으시면서 오늘 오셔서 그냥 인신 모독적인 발언, 혐오적인 발언 이런 것들로 회의 자체를 흐리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들어 보니 참으로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2분을 안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한테 내가 무슨 혐오적인 발언을 했어요?

○위원장 서영교 더 이상 발언을 드리지 않고……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서영교 넘어가요.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위원장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그다음에 박지원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위원장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박지원 위원 곽규택 위원.
- 곽규택 위원 위원장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 박지원 위원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고 좀 들어라, 들어.
- 위원장 서영교 말씀하십시오.
- 박지원 위원 지금……
- 곽규택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지금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니까 제가 신상발언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우선.
- 곽규택 위원 신상발언해야지요. 아니, 제가 무슨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요?
- 박은정 위원 회의록 보세요.
- 박지원 위원 조용히 하라니까.
- 곽규택 위원 왜 또 반말이야, 갑자기?
-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님, 어제 저녁 JTBC의……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 곽규택 위원 혐오적인 발언했다고 지금 저렇게 발언시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될지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신상발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 박지원 위원 전광훈 목사 보도 보셨어요?
- 법무부장관 정성호 요새는 TV를 볼 시간이 거의 없어서 못 봤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지금 박지원 위원님이 대체토론하시는데 토론을 자꾸 방해하지 마시고요. 경고합니다.
- 곽규택 위원 아니, 대체토론하는 중간에 지금 의사진행발언 준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서영교 경고합니다.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저보고 혐오적인 발언했다고 그러는데 뭘지를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좀 하세요, 곽규택 위원!
- 곽규택 위원 그래야 제가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서영교 가만히 있어요, 좀!
- 김승원 위원 발언을 제지해 주십시오.
- 곽규택 위원 왜 제지를 해요?
- 위원장 서영교 경고합니다. 그만하세요.
- 곽규택 위원 왜 제지를 해?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 김승원 위원 왜 이렇게 반말 섞어서……
- 곽규택 위원 아니, 위원장한테 혐오적인 말을 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승원 위원 아직도 검사야? 왜 그래?
- 박형수 위원 왜 반말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넌 판사야? 왜 그래?

○**박형수 위원** 왜 반말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판사야?

○**위원장 서영교** 조용히 하세요.

○**박은정 위원** 저게 전략이에요. 회의장을 엄청나게 엉망진창 만들어요. 저게 늘 저랬어요.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교**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경고합니다. 이제 조용히 하세요.

○**김태규 위원** 뭘 했는데 경고를 하십니까? 뭘 했는데?

○**위원장 서영교** 아니 여러분, 박지원 위원님이 대체토론하지 않습니까. 질서 좀 지키세요.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지원 위원** 동영상 좀 올려 보세요.

○**위원장 서영교** 잠깐 시간 멈추시고.

○**박지원 위원** (영상자료 상영)

소위 병보석으로 나온 전광훈 씨가 저런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보석 취소 요구를 사법부에 제출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석 취소 요구한 사실은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검찰국장, 알아요?

○**법무부검찰국장 이응철** 보석 취소는 안 하고 조건을 좀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법무부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입니다.

지난 5월에 보석 취소 청구는 아니고 보석 조건이 있었는데 집회 참가 제한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걸 좀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저분이 8월 15일 날 대집회를 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석을 해서, 뭐 건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뽐뽐하게 다니면서 계속, 외교 문제도 나올 거 아니예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검찰에서 그러한 요구를 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왜 법원에서는 저렇게 보석 나온 사람이……

들어가셔도 돼요.

저렇게 다니는 것 용납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개별 재판부에서 아마 잘 판단하리라고……

○**박지원 위원** 재판부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뭐든지 다 재판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왜 나오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각 재판부 독립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오실 때는 사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에서도 보석 요건을 강화해 달라, 집회에 나올 수 없게끔 해 달라는데도 법원에서 안 했어요. 저렇게 하면 8월 15일 날 소란을 피우겠다고 하는데, 아니 저분이 서부지원 사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요구해 주고 그 담당 재판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다음 법사위 나오실 때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때도 또 재판부에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토론을 더 신청하시겠습니까?

○**김동아 위원**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토론 종결을 동의하십니까?

○**박형수 위원** 토론을 왜, 토론 계속해야지요.

○**김동아 위원** 종결 신청합니다.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토론 종결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고 토론 종결이 들어왔으므로……

○**박형수 위원** 왜 없어요?

○**위원장 서영교** 김동아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토론이 왜 없어요?

○**위원장 서영교**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형수 위원** 반대합니다. 토론 계속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승원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형수 위원** 나갑시다, 나갑시다. 혼자서 이렇게 다 각본 짜 놓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왜 있어야 돼요, 진짜?

(일부 위원 퇴장)

(「표결하고 가세요, 표결하고」 하는 위원 있음)

(「좀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하는 위원 있음)

(「앉아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혼자서 다 하세요, 민주당만. 앞으로 우리 부르지 마.

(장내 소란)

○위원장 서영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다 나가고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위원 총 18인 중 찬성 1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 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사소송법(대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김남희 위원께서 제260조(재정신청) 대상에서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를 제외하고 고발인을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는 자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245조의13제4항에 공무소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위원께서 부칙안 제14조(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 제217조제2항 법문 표현 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균택 위원께서 제494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공소청 직원이 사법경찰관리에 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위원께서 제201조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검사의 피의자 면담 시, 제245조의13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피의자 면담 시 변호인 조력 보장의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께 잠시 제안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내용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과 함께 불송치 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지문을 포함해 피해자 등이 모르고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동시에 열람·등사 신청 남용도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고지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부대의견에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2항에 고

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 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7대 범죄 사회 약자의 경우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것도 큰 용기이자 기회입니다. 이 일을 검사가 최대한 꼭 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관련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에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합니다. ‘검사는 개별 법률에 따라 전건송치되는 소위 7대 범죄의 피해자 측이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들어야 한다’라고 부대의견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자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면개정안이 아닙니다. 일부개정안입니다. 수사 과정에 관한 절차를 저희가 조정했고 개정했고 그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담아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그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 나갈 수 있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혹여 검사와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저희가 사건번호를 검사에게 확실히 책임지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은 보완수사요구에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그리고 또 최소 한 달 내에, 불가피할 경우에 한 달 더 연장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리고 피의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도 해 놓았습니다. 검사가 하던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도 해 놓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기존에 있던 형사소송법보다 훨씬 발전된,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이 안도 정리했습니다.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그래, 앞으로 범죄자는 끝까지 쫓고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되고 검사와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법원은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이 내용에 잘 담아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입니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서 시행되게 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대체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제도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갖고 만들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도, 위원님들께서도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또 일선의 의견들을 잘 수용해서 갖고 추후에 보완할 점들이 나온다고 하면 잘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검찰이 또 저희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형사소송법은 우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또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된 법이고 이 법을 통해서 국가형벌권이 적절히 행사되고 그와 더불어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훌륭한 법이 통과됐으니 실무에서 빈틈이 없이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교** 과정 속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검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정치검찰들의 표적 수사, 왜곡 수사, 조작 수사 등의 아픔들이 있었으나 열심히 하시는 검사들께서 이 정의로운 사법체계의 중요한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고 경찰분들도 수사 과정 속에서 정의로운 사법체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고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해 나갈 부분들은 확실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타 상임위 법안 등 관련해서 의결할 내용이 있습니다.

7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은 상임위 법안을 의결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9시53분)

○위원장 서영교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등 현행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토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가명·익명 처리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한 경우 안전장치 마련, 공공의 이익 증진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것을 특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의15는 특례 적용 가능한 이 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10개 조문을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핵심 조문들이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해 위원회 의결을 신청하는 사안별로 필요한 개인정보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특례 적용 조문을 정하도록 명확히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공정위가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이 법 위반행위에 따른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기록송부요구권을 자료제출 명령권으로 강화하고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를 모든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하며 제출명령 대상 자료에 위반행위 증명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12조의 경우 당사자와 공정거래위 이외에 이해관계인까지 비밀유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 구조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송상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정치 않으며 법원행정처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밀유지 명령의 신청권자를 당사자 또는 공정위로 한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칙의 경과조치를 적용례로 정비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보험설계사 등이나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해서 결격사유와 밀접한 금융관계법령을 현행의 이 법 및 금융소비자법 외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을 추가하여 정의하고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결격사유에 대한 제척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3조는 적용례를 통해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부칙 제4조는 경과조치를 통해서 이미 등록된 자와 이미 재직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법문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2개의 부칙안은 중복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안 부칙 제3조 적용례만으로는 기존 자격자 및 임원에게 개정안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결격사유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해석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 규정만을 남기고 안 부칙 제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공정위의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보다 명확히 하고 조정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며 제1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맞추어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도 자료제출 의무 및 비밀유지 명령 등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부칙 제3조의 경우 처분시효 계산의 개정 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이미 공정위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의 범위 설정에 불명확한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례 조항으로 수정하여 장래 조사개시 사건부터 적용토록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정보를 처리·공개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27조의4제4항은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별과 계약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명령에 대한 실효적 확보 수단 또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이 해당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회행위와 사용행위는 법익 침해 정도 및 불법성의 차이가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다르게 규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4조의2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 공여를 자본금의 50% 이하로 제한하되 자본금의 50% 이하라도 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할 경우에는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강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적임원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등기부 및 정관을 기준으로 임원을 한정하도록 법문을 수정하였고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가 있

는 경우에는 회사의 지배구조 이론 및 입법례를 고려하여 제적인원 전원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공정위와 협의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이덕원 위원장께서는 지금 증시 문제로 긴급 상황점검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부위원장께서 대리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원 간사님, 손솔 위원님 그리고 김동아 위원님 대체토론하시겠습니다. 3분씩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3분밖에 안 줘요?

○위원장 서영교 5분 드릴까요? 5분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니, 3분 충분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위원장 하실래요?

○김동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3분 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더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개보위 송경희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개보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에서 잘 처리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아무튼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법안이고 국정과제이기도 하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잘해 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해외 R&D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정보를 외국 연구기관과 공유하면서 R&D를 진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마 정무위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정보가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김승원 위원 그런데 그게 외국 연구기관과 R&D를 이유로 아마 개인정보가 많이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되어서 그것 한번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이 법률안 말고 또 후속 법률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정무위의 심사를 우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라든지 또 혹시 이런 개인정보 침해나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긴급보호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안들이 우선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은닉이나 폐기를 했을 경우에 이럴 때 저희가

제재할 조치들이 마땅치가 않고 실제로 시장에서 은닉·폐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재할 것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김승원 위원 거기가 지금 특사경인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아닙니다.

○김승원 위원 특사경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행정조사권만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행정조사권만 있고.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김승원 위원 그러면 예컨대 주가조작 징후가…… 그렇다면 공정위지요.

그러면 검찰과는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하면서 일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주로 저희는 독립적으로 행정조사를 하고요. 행정조사는 좀 더 경찰……

○김승원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검찰의 수사권도 없애고 그다음에 특별…… 특사경은 아니라고 그러셨지.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특사경은.

○김승원 위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래서 저희 고발요청권이 있는데요. 고발요청권이……

○김승원 위원 아직도 독점적인 고발요청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에서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지금 그 고발요청권은 중수청으로, 그러니까 공정위가 고발요청권이 들어오면 중수청에 고발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검찰총장이 아니라 중수청장으로 바뀌고……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수사권이 있는 중수청장으로.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형사소송법하에서 크게 변화되거나 불편한 게 있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특별히,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총장이 했던 역할을 중수청장이 하는 것이 주된 변화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담합의 자진신고 감면신청 창구를 지금까지는 검찰과 공정위 두 군데에 창구를 뒀서 담합 자진신고하는 사업자의 인센티브가 불확실성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구는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든가 혹은 불편한 것……

○위원장 서영교 2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닙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바뀌어야 될 부분은 전부 다 정보 공유했구요.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손솔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손솔 위원** 송경희 위원장님, 개인정보 보호법 대안이 올라왔는데요. 취지나 이런 것은 알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과 개인정보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 충돌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법에 크게 우려하는 입장이지 않아요. 시민사회에서도 우려 의견을 가진 것으로 많이 알고 있고 정무위 1소위에서도 여러 우려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식별 가능한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손솔 위원**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정보 주체가 아니라 보호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허가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예외를 허용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큰 원칙에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위원님의 우려가 무엇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도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산업계 모두 상당한 기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법안을,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법익과 그리고 AI 개발을 통해서 개인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균형을 많이 고려해서 법안을 더 정비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정무위 대안으로 올라온 거고요.

개인정보법 자체는 정보 주체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그것을 통해서 개인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최대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균형감 있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익명·가명 처리로 AI 개발이 도저히 어려운 경우 그런데 공익이나 사회적 이익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보 주체나 제삼자의 이익 침해가 현저히 낮을 경우,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충족해서 사용하게 될 때도 반드시 안전장치를 그렇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를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법에서도 이미 이것을 허용하는 것들이 통과가 돼서 6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다른 타법에서도 관련된 개정 시도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의된 다른 법안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개보법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회가 관리감독까지 하면서 이행점검까지 하는

데 타법에서는 또 그렇게 되지도 않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보법을 통해서 안전한 활용을 더 보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솔 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이렇게 시행되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아예 예외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원칙과는 많이 다른 부분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그 어려움과 책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잘 안전하게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 주병기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민하고 쿠팡이츠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 끼워팔기라든지 MFN(최혜대우) 사건은 심의 중입니다.

○**김동아 위원** 배달앱 관련해서 조사를 마치고 지금 심의 중이라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심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아 위원** 과징금은 대충 언제 정도 부과되나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러니까 심의가 완료되면 부과되는데요. 그 심의 일정은 7월 말 8월 초순입니다.

○**김동아 위원**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배민에서 상생 한 3000억 원, 쿠팡이츠 600억 원 내서 동의의결 제도로 해서 조사를 그만해 달라 이런 취지로 동의의결 신청을 했는데 기각했더라고요. 그 기각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일단 두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는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고요. 그리고 동의의결 안에는 두 회사가 법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사업자들과의 상생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상생안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부족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피해회복안 아니면 상생안을 가지고 온다면 동의의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어떤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여튼 피해구제 대책, 상생안이 매우 부족했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고요. 또 하나는……

○**김동아 위원** 제가 하여튼 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공정위에서 1조가 됐든 몇천억이 됐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그게 상생안으로서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떤 혜택도 가지 않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아무리 과징금을 세게 때렸다 하더라도 또 질질 끌면서 대법원까지 분

명히 소송이 갈 것이고 큰 금액으로 한다면……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분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은 사실은 큰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상생안같이 그렇게 출연을 요구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더라도 그 과징금을 소상공인이나 피해자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피해는 사실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용자들이 다 피해 보고 과징금은 국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는 이 제도가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징금을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공정위 내부에서 마련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정확하게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 중의 하나고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은 저희가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저희 법 위반을 근거로 해서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구제를 위해서 어떤 기금을 통해서 이런 소송 대응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것은 이미 지금 법안이 나와 있고 이번 정부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의결 제도는, 아까 배민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아주 많습니다. 수십만 이상의 소상공인들이고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생방안이 가져온 피해구제 액수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상 수수료를 조정해 주는 것인데 그런 방안은 없었고요. 그래서 입점업체 단체들이 전부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었고요. 찬성하는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판단은 이렇게 피해구제하는 피해구제는 아주 임시적인 구제일 뿐이고 그 피해구제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상생안이 너무 많은 마케팅이라든지 자기 브랜드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인다는 점도 아주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법 위반이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동아 위원 피해회복 관련해서 특정 기업 하나가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봤을 때는 당연히 소송으로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천억 되는 과징금을 피해자한테, 피해 상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지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질문이 너무 좋으신데 아니, 저런 걸 질문받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플랫폼 경제는 일단 피해업체가 아주 과다한, 아주 큼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으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좀 더 플랫폼 경제에 잘 맞는 그런 새로운……

○위원장 서영교 플랫폼 공정화법이 언제 다 통과됩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저희는 가능한 한 이번 올 연말까지 통과시키기로……

○위원장 서영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이지 않으시고 플랫폼 공정화법이……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아니, 저희도 적극적입니다. 지금……

○위원장 서영교 언제부터 얘기됐는데…… 말씀은 아주 적극적이고 되게 쉬운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법안이 나와 있고 계류 중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안이 없어도 과징금 받은 거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안이 있어야 돌려준다 그럼니까? 피해 봤으면 돌려줘야지.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과징금은 국고로 가기 때문에 국고에 간 예산을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상생 정책으로 환원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소상공인들이 하루이틀이 아닌데 좀 확실하게 하셔서 나눌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일단 시장 이런 독과점사업자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중요한 역할이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전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토론이 다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 문제 때문에 금융위 부위원장님께 얘기할 것도 있지만 저희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서 잘 대응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5항까지, 18항 및 1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좀 늦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래전에 벌써 각 상임위에서 통과됐던 법안들이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라 저희가 늦게라도 오늘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려야 빨

리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시간 여러분을 좀 기다리게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서 더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시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애써 주시고 또 성과도 내 주시고, 오늘 늦게 오시게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통과시켜 줘서 좋으시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예,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래 기다리셨지요? 저희가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빨리 통과시켰어야 되는데 좀 연기하고 연기하고 이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일 더 잘하실 수 있게 빨리 통과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병기 위원장님, 송경희 위원장님, 권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과방위 법안입니다.

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0)

2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0시18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7항까지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8건 법률안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함에 따라 연구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22항, 24항, 26항, 27항 각 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과학기술원 소속 교원과 임직원이 해당 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에 대해 노무,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20항, 23항, 25항 등 3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홀룡하십니다. 홀룡한 검토보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서는 AI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식 참석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과학기술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1차관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AI데이터센터는 대통령님께서 얼마얼마하게 투자도 유치하시고 또 대한민국에도 AI데이터센터 등 4755조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위원장 서영교 투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AI 3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력수급계획까지도 차질 없이 관계부처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도 그 이익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인구소멸지역이 없게 균형발전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든 오늘 주식이 서킷 브레이커 그렇게까지 되었으니 상당히 걱정이 많습시다.

좀 더 잘하셔서 대한민국 더 도약할 수 있게 대체 불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원자력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통과된 법안인데 이렇게라도 또 통과시켜 드려야 빨리 본회의 통과하고 시행할 수 있을 건데 저희가 늦게라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3항, 2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2항, 24항, 26항 그리고 27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또 위원님들도 다 일정을 이쪽에 맞추고 계십니다.

인사말씀 간단히 하고 가시지요.

원자력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 최원호 법안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자력사업자한테 안전에 대한 책무를 지우는 그런 법안을 오늘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원자력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서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1차관입니다.

연구 현장에서 정부출연연구원과 4대 과기원 등등의 우수한 창업 성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해충돌 규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해결해 주셔서 좀 더 창업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법안 통과를 위해서 있는데요. 위원님들 계신 지역에 퍼지컬AI든 AI데이터센터든 반도체공장이든 좀 잘 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되는 아시겠지요?

두 분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 감사합니다, 대신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 서영교 제주도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해수위 법안입니다.

28.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6)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0)

3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3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2)

3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9)

3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3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35.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2)

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0)

37.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3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72)
39.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
40.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49.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0시24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9항까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최기도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9항까지 22건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하고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은 유엔해양총회 등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6조에서는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회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유엔해양총회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법 등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 농산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기초농어업회의소와 별도로 안 제11조에 따라 기초어업회의소가 설립되어 하나의 관할구역에 안에 복수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존재할 경우 적용 규정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안 제16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5조에 관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가·변경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인 제21824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2027년 6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법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7년 6월 17일로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제34항, 제35항, 제39항, 제44항, 제47항 및 제49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3항, 36항, 38항, 41항 및 제43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님, 어서오십시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임하수 산림청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장인식 해양경찰청직무대행, 어서 오십시오.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부장관은 폭염 피해 예방 활동 지역 현장 점검 일정으로, 박은식 산림청장은 APEC 산림청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차관 및 차장께서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황종우 장관님, 46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어획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금 규정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사실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던 벌금 규정이나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쪽 편으로 다 옮겨놓은 그런 결정……

○김승원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45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보면 과태료 규정 삭제했는데 다 같은 취지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같은 내용으로 다,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더 강화된 내용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축산차관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송미령 장관님 현장에 뭐 하러 가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최근에 폭염이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일사병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을 농업인들께 좀 더 널리 알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어제 TV 보니까 소들이 막 쓰러지고 돼지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닭이 전부 다 폐사하고 그러던데 대책은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지난 6월부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돼지의 경우에는 특히 땀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차광도포제를 도포해서 축사의 온도를 낮춘다든가 그다음에 얼음물을 보급한다든가……

○**위원장 서영교**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데는 에어컨 놓으면 안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일부 시설이 좋은 농가들은 에어컨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좀 열악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가 보기에선 그걸 지원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닭들이 다 폐사해서 그걸 제가 보았는데 무슨 닭에게 에어컨이야라고 하겠지만 그 시설이 오히려 물을 뿌리고 뭐 하는 시설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리 넓지 않다면 위에 뚜껑은 다 있고 주변을 좀 닫고 비닐 같은 거라도 닫고 에어컨 한두 대만 하면 폐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한데 그거를 안 하시고 올해도 보니까 전부 다 막 쓰러져 가고 죽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송미령 장관께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위원장 서영교** 그런 답변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선 에어컨 두세 대만 놔도 괜찮은데 어느 누구도 그런 곳에 에어컨을 넣는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지요. 닭을 파는 시장에는 닭이 들어 있는 곳에 냉장시설이 돼 있거든요. 다 있는데 오히려 그런 현장은 안 되어 있으니 제가 보기에선 그런 것은 농협이든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하면 이런 여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36항, 38항, 41항, 4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2항까지 그리고 34항, 35항, 37항, 39항, 40항, 42항 및 44항부터 49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종우 장관님 그리고 김종구 차관님, 임하수 차장님, 장인식 직무대행님, 혹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따로 의안 잘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통과시켜 주신 법률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최대한 촘촘히 준비해서 우리 농업, 농촌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차장 **임하수** 의결해 주신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 현장, 임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 내용이기 때문에 임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직무대행 **장인식** 연안사고예방법과 수상구조법 개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경찰은 연안사고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산자중기위 법안입니다.

5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5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52.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5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5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56.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59.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0시34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9항까지 1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간단히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제50항부터 59항까지 산자위 소관 10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정의하고 자금, 기반시설 등의 지원 대상을 산업위기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15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7항에서는 제1항의 자금지원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의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해당 자금의 관리주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금융 및 시중은행 자금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점, 산업부장관의 자금지원 요청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 대해 자율적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의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5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저조광권 소멸 후에도 해당 인공구조물 등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활용시설,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 등인 경우에는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면제 당시의 사정과 달리 사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불분명하므로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8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광공업품의 제조 외에 개발·설계·설치·운영하는 자도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부장관이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위반행위를 개별 조문으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59항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의 결격사유 등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실태조사, 통계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주얼리업자의 불법거래, 탈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에 이를 구체화하였고 또한 주얼리산

업 진흥업무 전담기관의 사업 범위를 전담기관 지정 목적 및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규정을 신설·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부장관의 주얼리업자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50항, 51항, 52항, 54항, 56항 등 5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5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얼리산업 관련 법안 설명을 길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법률안 심사를 위해 하루 종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늦게라도 있으면서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으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위원장 서영교 저희에게 주얼리가 좀 오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웃음소리)

조금 편안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으로 인해 차관께서 대리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아 위원 저 잠깐……

○위원장 서영교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문신학 차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드디어 주얼리법이 통과가 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김동아 위원님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동아 위원 차관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주얼리업계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얼리법에 대해서 등록제가 새로 생기고 해서 사실 걱정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얼리업계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등록을 해서라도 자기들 업계가 좀 더 투명해지기를 바란다는 염원에서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주얼리가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서, 통화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부에서 수십 년간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얼리 시장이 모조품들이 넘쳐나고 지금 해외 유수의 브랜드들의 작품을 बे끼는 수준밖에

안 되는, 손 기술은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법안 통과만이 아니라 잘 준비해 주셔서 산업 진흥에 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K-컬처에 K-주얼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문신학 차관님, 53번 법안인데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거기 보면 15조 7항에 산업부장관이 정책금융 지원, 시중은행에 자금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입장이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주무부처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상징적으로라도 들어가는 게 자금지원을 위해서, 지역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임위에서는 넣었습니다만 다만 금융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 간 협의 요청을 지역산업 위기대응을 할 때 당연히 하고 있어서 지원 패키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지금도 최선을 다하지만 전향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정책 의지를 표명해 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산업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는 데.

○**김승원 위원** 그렇게 지금 조문체계가 정비된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이상해요, 산업부장관이 시중은행한테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하는 게. 이런 비슷한 조항이 또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입법례가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그렇게 수용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도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50번, 51번……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김승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50번, 51번 법안 관련해서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다음에 의견 보니까 특허권, 디자인권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시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그동안 특허료 등을 안 내면 특허권이 소멸당하게 되는데 이게 일정한 기간 내에 특허료를 추납하게 되면 특허권을 회복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당한 사유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민원인,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좀 더 권리 회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특허료를 추납하게 되면 권리

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김승원 위원** 고의가 아닌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해당되겠네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그렇게 명시적으로……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특허권을 받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수료라든가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고 있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1년, 2년, 3년 지나도 수수료만 내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1년 이내에…… 대신에 일정하게 가액을, 추가적인 수수료를 내도록 재설계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예, 고객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더 넓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입니다.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50항부터 52항까지, 54항부터 56항까지, 58항 및 5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신학 차관님, 김용선 처장님, 위원님들께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고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이 시간에도 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셨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주얼리는 옳니까, 안 옳니까?

(웃음소리)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금시장도 금산업을 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투명하지 않고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일도 잘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인사말씀 하시고 이석하시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주얼리법같이 위원님들께서 입법을 하시는 게 하나의 산업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저희 산업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통과해 주신 주얼리법 등 나머지 법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속도감 있게 챙겨서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산자부는 장관도 똑똑하고 차관도 똑똑하네.

○위원장 서영교 꼭 해남 쪽에 뭐라도……

처장님.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을 개정해 주셔서 국민과 기업들이 좀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서 영업비밀을 소개·알선하는 기술 브로커들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우리나라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위 법안입니다.

6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8)

6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01)

6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15)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11)

6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9)

6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5)

6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378)

6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6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3.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0시45분)

○위원장 서영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73항까지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혜진 의사일정 60항부터 73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7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화장품관리협회의 협의 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화장품관리협회를 신설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식약처는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뇌혈관 질환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연구·조사·통계 사업을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이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누설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어 개별 법률에 이를 별도로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법률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은 현행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72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지정된 대구·경북과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로 개칭하고 위 단지를 관리 하던 2개의 재단을 통폐합하며 복지부장관이 그 외의 의료 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연구개발과 관련된 단지 내 실증 특례제도를 도입하며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10년 내에 분양받은 부지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된 다른 기관에게 이를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복지부장관이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단지 내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확보를 위한 보험 가입 시점을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화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지침을 관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64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60·61·62·63·65항, 66항, 68항, 69·71·73항 등 10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출신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65항 약사법 개정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생소하긴 합니다. 팩토리, 공장, 창고 이런 명칭을 쓰는 약국이 실제로 있나 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메가팩토리, 창고형, 최다·최고 이런 식의 국민들을 혼동시킬 수 있는 명칭을 쓰는 약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실제로 전국적으로 이런 팩토리, 메가 또는 창고형 약국 이런 사례는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산되기 전에 명확하게 법에 근거를 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팩토리 약국이라든가 창고형 약국 이걸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좀 더 하위 법령에서 사용을 규제하는 게 필요한 용어들은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이고요. 현재 하위 법령에 있는 것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상임위의 판단이기도 하고 저희 복지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인식하기로는 대형 매장이 들어오면 동네 골목 상권이 다 죽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동네 약국이 소멸될 위험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성윤 위원 이렇게 되면 동네의 골목 약국이라든가 동네 지역 약국이 실제로 다 황폐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 좀 적절한 방안에 대한, 특히 창고형 약국이라는 면이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약을 구매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정확한 복약 지도라거나 안전한 약품 관리에는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창고형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가 가지고 카트라든가 바구니를 들고 와서 약을 담아가다가 그냥 계산하고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대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을 그렇게 구매하는데요. 약물에 대한 위험성을 좀 더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입니다.

○이성윤 위원 국민들께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팩토리 또는 창고형 약국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심각한 문제 하나만 꼽아 보라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위해성이 있는 약품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명칭만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대형 약국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력 기준이라거나 안전을 좀 더 강화할 방법에 대한 것을 현재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의약품 오남용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과다 복용이라든가 또 지역 약사들이 실제로 1차 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급할 때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이성윤 위원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지역사회에 가니까, 전주인데요 전주에도 이런 약국이 있다고 누가 신고를 하면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해서, 초기인데 이렇게 신속하게 법안이 왔을까 의아하기도 하고 정 장관님이 역시 빠르구나 생각을 가졌는데 팩토리, 창고형 이런 약국의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께 많이 알고요.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설명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기사를 보고 또 봐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안전하게 약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명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정은경 장관님 그리고 오유경 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여기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법의 내용과 아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작년 국감에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같은 경우에 면역세포가 소실되어서 예방접종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성인 13세 이상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의료계에서 많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현재 아시다시피 국가 예방접종은 어린이나 노인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특별한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나 장기 이식하신 분들은 비용 부담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 급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봤더니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예방접종 지원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의 어제 기사가 뜨긴 하는데 혹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그것은 치료 목적의 예방백신이기 때문에 건보에서 급여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부 진행 상황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받은 환자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환자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큰 문제도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잘 챙겨 보고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작년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창고형 약국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약이 일종의 상품처럼 인식이 되고 너무 쉽게 약을 다량으로 구입하게 돼서 약물 남용의 우려가 있는 그런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법이 통과되고 그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현안질의 하나 해도 괜찮습니까? 바쁘면 그냥 법안 질의가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박균택 위원** 식약처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대통령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줄기세포 주사 맞으러 다니는 분들 많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그것 보건복지부에서……

○**박균택 위원** 아, 보건복지부 일입니까? 식약처는 상관이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아니, 관련이 있지만 좀 더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일본으로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러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균택 위원** 1년에 약 5000억 정도가 거기에 돈이 소비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는 분들은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있고 뭘 잘 못 느끼겠다는 분들은 봤어도 부작용을 느꼈다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규제를 할 예정입니까? 현실적으로 다 맞고 다니는데 굳이 비싼 돈 내고 외국에 돈 써 가면서 외국에서 맞고 오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저희가 첨단재생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나 또는 첨단재생의료 제품으로서 의약품으로서 두 가지 트랙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치료를 도입하려면 환자한테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안전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 자료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정부가 작년부터 R&D 예산을 도입해서 한 4개 과제 정도, 주로 일본으로 원정 치료를 많이 가는 그 치료 영역에 대해서 4개 과제 정도의 연구비를 정부가 지원을 해서 현재 여러 병원, 의료기관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공식적

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된 주제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연구만 하고 있을 것인지, 2년이면 1조씩이 나가는 것인데 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번 연구 결과를 내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난번 제가 질문할 때 곧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래서 4개 과제 연구비를 확보했고요. 그 과제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연구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3개는 시작을 했고 하나는 계획을 보완하고 있어서……

○박지원 위원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시작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니, 그것은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일부 부작용들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적어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과 맞아도 괜찮다라는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게 이루어지게끔 정부가 좀 더 마중물 예산을 투입해서 근거를 만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더니 상당히 긍정적 말씀을 장관께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두운 답변을 하시네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게 진행돼서 이제 연구비가 확보가 됐고 연구팀이 구성이 돼서 연구가 시작됐다는 좀 더 진전된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지원 위원 언제까지 돼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은 제가 임상연구 계획서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환자를 모으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니까 일정 기간 정도의 연구기간은 필요합니다.

○박지원 위원 글썄요. 전 세계가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고려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살 빼는 약, 위고비 그리고 삼성바이오에서 2조 4000억에 인수했다는 그 제약회사는 잘 됩니까, 그 품종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박지원 위원 살 빼는 약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마운자로…… 아니, 삼성 얘기하셔서 제가……

○박지원 위원 예, 마운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비만치료제를 말씀하시는……

○박지원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만치료제를 말씀하시는……

○박지원 위원 예, 그건 삼성바이오에서 인수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미국 펩타이드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국 펩타이드 회사 인수하신 것으로 최근에 알고 있는데 요즘 펩타이드 의약품들이, 이런 마운자로 같은 게 펩타이드 의약품이라서 앞으로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지원 위원 시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시장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펩타이드……

○박지원 위원 그래서 인정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아니요. 이제 그런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유통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면 그걸 인수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수합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회사 하나를 인수한 것으로 저희가 뉴스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예, 원료 의약품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기 때문예요 아직은 신약 개발이나 이렇게까지는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지원 위원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이러한 것은 되는데 왜 저러한 것은 안 되는가, 보편화된 것은 안 되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말씀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0항부터 63항까지 및 65항부터 73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경 장관님, 오유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오늘 화장품 육성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화장품이 지금 글로벌하게 세계 2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연구개발부터 수출 지원까지 전 주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육성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에 대해서도 하위법령 충실히 만들어서 법에서 수정해 주신 취지가 잘 반영되게끔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전에는 샤넬 화장품 그러고 외국 것만 찾았는데 지금 대한민국 화장품 등이 아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글로벌 수출 2위이고요,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2위 정도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유경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식약처도 식의약 안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법안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후노동위 법안입니다.

7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700)

7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7.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1시03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80항까지 일곱 가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세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진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4항부터 제80항까지 7건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안 제3조의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실제 조문이 2029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됨에 따라 안 제8조의 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절차 조문도 함께 사문화되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이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3조도 관련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은 안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명확히 하고 이를 시도지사로 약칭하는 한편 안 제16조제2항의 지방

자치단체의 장도 시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안 제12조의15는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목표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이를 ‘발전사업자 및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와 ‘발전공기업’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안 제7조의4제5항에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규정 중 전기사업 및 그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부 규정을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그 사업자에게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준용되는 조문 중 제70조는 준용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그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준용규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안 제10조의2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주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및 76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의사일정 제80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 관련한 법안, 재생에너지 관련한 법안 너무 소중하니까 꼭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하고 사실은 그때부터 준비는 해 놔는데 여야 원 구성 때문에 이제서야 모시고 통과시켜 드리게 됨을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다 출석하셔서 장관님 오시면 통과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위원님들 한번 다시 잘 보시고, 위원님들이 애쓰셨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냥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서영교 그럴까요?

이 안건들에 대해 그래도 혹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 토론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지원 위원님이 없으시다는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 좀 의미 있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니까 박지원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김승원 위원님 먼저 토론하시겠습니다.

2분으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분씩 가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법안은 아니고요. 수도권의 기허가받은 데이터센터인데 거기에 필요한 전력량 인가 뭘 좀 더 받아야 될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요새 하도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말라는 정부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기류라서 잘 안 해 준답니까. 그런데 기허가 된 것은 해 줘야 거기도 운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공적으로 한 약속이고 기존에 허가가 난 것이면, 수도권의 전력이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만 어떻게 든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저는 법안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요. 작년, 최근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0대 사무관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자연차 중심의 태스크포스 가동하고 기존 직원 간 멘토링 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은정 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당 사무관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생전의 업무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문화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 신생 부서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 기후부의 젊은 사무관 한 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서 조사하는 내용도 있어서 최종적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꽤 의욕 있고 성격이 밝은 사무관이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상당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충분히 그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고 그래서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과거에는 소위 멘토링 시스템이 작동해서 수습 사무관을 떼고 정식 사무관이 됐을 때 초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애로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최근에 특히 고위간부들일수록 KTX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수습 딱지를 갖 댔 사무관이 적응하는 데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당사자들, 젊은 사무관의 의견을 지금 충분히 듣고 있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합되면서 전체 업무량이 많이 늘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인력이 늘지를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업무 부하가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안부랑 협의해서 적절하게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문화 또 직급 내에서의 여러 가지 풍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장관님, 광주에 미래차산단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박균택 위원 그린벨트 문제 때문에 지금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광주특별시장님과 여러 차례 협의했고요. 미래차산단이 장차 광주에 들어설 반도체산단의, 일종의 협력업체가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 소위 비오톱 1·2등급지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기본 실무는 광주에서 대체지를 빨리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아예 당초에 산단의 조성 예정지를 오히려 비오톱 1·2등급이 없는 지역으로 조정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광주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빨리만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이 참 예뻐요. 요즘 하늘이 참 예쁘고 언젠가부터 어쨌든 황사도 없고 좋은데 우리가 많이 노력한 결과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2018년, 17년경에 수도권에 3월 달에 황사가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미세먼지가. 중국에 석탄이, 특히 베이징 주변에 석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우리도 충남에 석탄을 계절 관리를 하면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가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주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렇게 기후에너지장관님 오셨으니까 국회의원들 지역구 곳곳에 어떤 식으로 자연을 더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곳곳에 정보 같은 걸 주셔서 그런 장치들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0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부터 79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하반기 들어서 첫 법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통과해 주신 법들은, 실제로 오랜 기간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법률들이 몇 개월간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햇빛소득마을을 통해서 농어촌지역의, 특히 인구소멸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에너지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이고요. 그 외에 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은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또 에너지 대전환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법들입니다.

통과시켜 주신 만큼 이 제도를 잘 운영해서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로 AI를 작동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세대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나라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8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0)

8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45)

8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69)

8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5.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6.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1시15분)

○위원장 서영교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1항부터 제86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34조의7제4항제5호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이용회원에게 고지해야 되는 금지행위로서 제12조제1항제7호의2를 인용하면서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의 내용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금지행위를 ‘운송종사자 중 화물차주가 위탁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 신설되는 안 제34조의7의 운송플랫폼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송가맹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점이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체계·자구상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안 제13조의2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열악한 재정여건들을 고려해 삭제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제1차관 출석하셨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베트남 해외 수주 지원 관련 국외출장 일정으로 인해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이탁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4시부터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4시부터요?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또 늦게까지 기다려도 하고 가시는 게 낫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와 있습니다가 섞여서……

김한규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차관님, 의사일정 84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법 취지 자체는 결국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선정을 쉽게 해 주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완전하고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부분 자율주행차하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테슬라가 소위 FSD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부분 자율주행차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내에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실무자에게 좀 제가……

○김한규 위원 시간을 멈춰 주지도 않으셔 갖고 저는 마지막이라고…… 빨리 해 주십시오, 누구든.

○위원장 서영교 아니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정책과장입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부 차량만, 미국에서 생산된 FSD를 장착한 차량만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중국에서 생산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받은 차량만 판매가 가능한데 FTA상 미국자동차는 인증받은 걸로……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러니까 똑같은 차량이 과거에 미국에서 생산된 것들은 국내에서 자기인증으로 해 갖고 운행할 수 있게 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거는 인증을 안 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 자기인증 자체는 안전기준에 맞아야 할 수 있는데 국내 안전……

○김한규 위원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 인증기준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김한규 위원 우리나라 인증기준에도 맞지 않는데 그냥 FT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건가요, 현재?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 FTA상 미국에서 인증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걸로 의제가 돼서……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데, 우리나라 인증기준에도 안 맞는데 한미 FT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 국제기준상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완화된 요건으로 미국의 수많은 소비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 자기인증 기준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가 아직 자율주행차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허용을 안 해 주고 계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장 박정혁 제가 자율주행정책과장인데요, 그것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보지 않고, 자율주행차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 차, 레벨2 형식의 자율주행차가 아닌 기존 차가 자기인증받는 그 체계를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이게……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김동아 위원** 실무자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김한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김동아 위원** 차관님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정책적인 질의에 대해서. 그걸 실무자한테……

○**김한규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시범실시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는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못 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차를 산 소비자는 되고 아닌 경우는 못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현대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아직 못 만들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미 FT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만 해 주고 똑같은 차인데 중국에서 생산된 거는 안 해 주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체계상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한미 FTA 때문에 문제가 있는 차를 우리가 허용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니까 따로 설명 듣고 다음 국토위 법안이 있을 때마다 여쭙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보니까 여기는 다 물어봐도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다음에 여쭙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오늘 법안하고는, 법안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계속 질의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 1분 해 주시고 또 박지원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차관님, 공공 유희부지에 주택 공급하는 것 그 업무도 담당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저희 지역에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국가기관과 협의가 돼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멈추라고 그래 놓고 거기다가 주택 공급하겠다고 그러더니 무산이 됐어요. 거기도 김빠지고 저희도 김빠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됐고요.

한 곳은 1차에는 안 들어갔다가 2차 주택 공급할 때 6월 말인가 그때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지자체랑.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차 주택 공급 계획은 8월 말에 나온다고 그러던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시다마는 각 부처별로 토론회를 했고요. 공급과 세제와 금융에 대한 토론회를 했고 대통령……

○**김승원 위원** 아니, 어쨌건 거기에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김승원 위원 주택을 국가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반대 안 하고 찬성을 했는데 왜 자꾸 계획이 지연되거나 틀어지거나,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지역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든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같이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거기에 경찰단 기동부대가 온다는 걸 제가 정말 삭발을 각오하고 막았는데 그걸 또 국가가 싹 가져가 버리잖아요, 주택 공급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몇 달 동안 안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시설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재정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정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그것을 주택으로 바꾸는 업무를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괄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곳을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지금 법안들은 다 전체회의에 좀 계류시켜 놓을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합니다.

(웃음소리)

현장의 중요한 부분을 발로 뛰어서 좀 알아봐 주시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직접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게 챙겨 보셔야 좀 나아지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제가 직접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장관님들과 차관님들이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3분 드리세요.

○박지원 위원 제가 해남·완도·진도 박지원입니다.

섬은요 다리가 주권입니다. 생존권입니다. 요즘 세월호 이후 굉장히 안전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바람만, 비만 오면 모든 선박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도 생존권도 다 박탈당하는데 사실 국도가 아닌 지방도, 군도에 섬다리를 하나 놓으려면 최소한 1000억에서 2000억, 3000억 들어요. 이것을 좀 해결해 줘야지 기초단체에 그 예산이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어려움을 알면 섬주민들의 주권도, 생존권도 보장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박지원 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철도 5개년 계획, 국도 5개년 그걸 결정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지금 저희 이번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잘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저희가 이번에……

○박지원 위원 아니, 고개만 끄덕거리면 속기록에 안 나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우리 정부에서 5국3특 성장전략을 짰고 5국3특이라면 각 거점별로 공간 계획과 그리고 교통망 계획도 새롭게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서남해안권의 광역교통망 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국도 계획 그리고 철도망 계획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물론 국토부 소관은 아니지만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런 도서지방에는요 아스팔트 할 필요도 없어요. 예비타당성 경제성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서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잘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저한테 한번 오세요. 오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꼭 찾아뵙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안 오시면 혼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혼나지 않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그 섬을 저희가 한번 현장답사를 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고 또 위원님들 직접 좀 찾아뵙고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경기 광명을 김남희 위원입니다.

차관님,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요. ‘신안산선 개통일이 기존 계획보다 연기될 전망이다. 전동차 제작사 다원시스가 자본잠식으로 전동차 공급할 수 없게 된 데다 지자체 간 협의 무산으로 여유 전동차 활용 방안도 불발돼서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것 대통령님도 지적하셨던 사안인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제가 1차관인데 2차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김남희 위원 아니, 이것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것 알고 계시지요? 원래 2025년 개통하기로 했던 건데 그게 2026년으로 밀렸다가 저희 지역에서 신안산선 붕괴사고 나는 바

람에 그것 때문에 또 2년 연기가 됐다고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동차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전동차를 안 만드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전동차 회사 계약 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2년 넘게 미뤄질 예정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뜨고 있어요. 이것 사실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이 신안산선 사업 잘 아시겠지만 경기 서남부권에서 많은 시민들이 수년째 기다리고 있는 정말 중요한 철도 사업인데 계속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다가 붕괴사고도 문제지만 이렇게 전동차 업체도 부실 계약을 해 가지고 결국 다 손해 보고 계약 해지하고 새로 업체 찾고 그 과정에서 2년씩이나 더 늦어진다는 기사가 뜨면 시민들이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상황 확실히 확인하셔서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다원시스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철도차량의 공급이 늦춰질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철도차량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김남희 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그리고 다만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소상하게 파악해 가지고 언제까지 개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대책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81항부터 86항까지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이탁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하고 가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 저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총 6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한규 위원님하고 김승원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서영교 위원장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인사말 중에 제일 훌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을 처음으로

넣었어요. 앞에 있는 법안들은 다 다시 되돌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걱정이 좀 되는 게, 혹시 공시지가 현실화가 몇 %까지 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저희가 지금 70%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현실화를 더 시키실 겁니까? 안 하셔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가 될 때마다 신뢰성, 현실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꼭 장관님께도 그리고 정부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명심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석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21시34분)

○위원장 서영교 국회법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김승원 위원님께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서면동의서에 김승원 위원 외 한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사일정 제88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21시35분)

○위원장 서영교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숙려기간 미경과 의결……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7항 및 제88항의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그 법안입니다.

8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1시36분)

○**위원장 서영교**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7항 및 제88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 소관 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정수를 26명에서 22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22명에서 26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국회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체계·자구 심사기한이 평균 43일을 상회한 점 등을 감안하면 법사위 심사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경우 충분한 체계·자구 심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제원리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사위원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고유법인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라서 60일, 체계·자구 심사인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라서 30일인 점을 각각 명확히 하여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명호 국회사무처 입법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무도 대체토론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7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8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호 입법차장님, 고마우시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정명호 예.

○위원장 서영교 오늘 통과시키고 오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하시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정명호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의 구체적인 법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를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1시39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도 밤 12시까지, 위원님들은 소위원회를 밤 11시 30분, 그러나 여기 계신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분들은 더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소중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진행하다 보니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어제도 잠 한숨 못 잤을 것이고 오늘도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느라 긴장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했을 텐데 오늘 또 밀린 것까지 이렇게 다 통과시키는 데 애써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너무나 미안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한 분도 안 빼 놓고 계신 법사위의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민전 김승원 김용민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형수 서영교 손 술 윤상현 이성훈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정명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산림청

청장 임하수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보고사항】

○의안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4.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24.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 7. 27.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이상 3건 7월 27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26년도 2분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

(2026. 7. 27. 법무부 제출)